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김희진 · 권오훈 · 김현정



국가인권위원회

이 안내서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등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책 관계자가 아동인권에 기반한 대안양육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아동인권 이론과 실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은 그룹홈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아동보호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가정 기반 양육환경 조성 및 아동과 원가정의 재결합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원가정과 대안양육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이해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인권과 대안양육에 관한 중요한 문서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본 안내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안내서가 아동이 중심이 되고 아동인권이 실현되는 대안양육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집필진

김희진(변호사, 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권오훈(노무사, 직장갑질119 교육센터장)
김현정(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담당사무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김희진 · 권오훈 · 김현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2022년 11월 25일 발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교재로 기획하였으며, 김희진(변호사, 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교재 전반을 책임집필하고, 권오훈(노무사, 직장갑질119 교육센터장)은 종사자의 노동권을, 김현정(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담당사무관)은 대안양육과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7) 나라키움 저동빌딩에 소재하고, 담당 부서는 인권교육 기획과(02-2125-9852)입니다. 표지 및 본문 디자인은 더브레인(The Brain), 인쇄는 상지사P&B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책은 교육교재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산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ISBN 978-89-6114-916-7 93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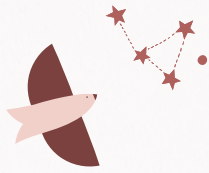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김희진 · 권오훈 · 김현정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사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권리 행사에 있어 취약함에 따라 성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순으로 아동은 고유한 권리가 부정당하거나 인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유엔은 성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제28조와 제29조, 일반논평 제1호를 통해서 교육의 목적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등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인권교육은 교육에서 필수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협약 제42조에서 각 국가는 성인과 아동에게 아동인권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인권교육 가이드라인인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제1차 단계의 핵심 목표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설정하고 아동과 교사·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단위 교육 방침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있고, 이후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그 목표로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설정하여 아동·청소년 분야 성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아동과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국가가 필수교육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수교육’이란 아동의 인권 실현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서 인권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아동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경험하는 존중감과 인권 침해 정도는 아동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취약계층의 아동일수록 존중을 받은 경험이 낮고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간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인 유·초·중등 교육과정과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종사자들은 시설 내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교육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도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후속작업으로 본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서는 아동인권 이론과 실천 원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이지만 안내서가 제시하는 아동인권 원칙과 기준을 통해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안내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자료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발간사 • 4

1부. 도입 • 9

1. 안내서의 필요성 • 11
2. 구성 및 내용 • 13
3. 안내서의 활용 방안 • 15

2부. 아동인권 • 17

1. 인권과 아동의 권리 • 19
2. 아동의 대안양육이란? • 20
3.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 29

3부. 대안양육 종사자의 업무 원칙 • 39

1. 비차별(Non-Discrimination) • 41
2. 아동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 43
3. 생명·생존 및 발달(The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 47
4. 참여 및 의견 존중(The view of the child) • 48

4부.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 • 53

1. 원가정 보호 • 55
 - 1-1. 출생의 기록과 보존은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 ... 55
 - 1-2. 모든 아동은 원가족 교류를 원한다 58
 - 1-3. 시설보호아동의 보호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59

2. 양육 단계 • 64

2-1. 차별받지 않을 권리	64
2-2. 종교의 자유	65
2-3. 사생활의 자유	66
2-4. 적절한 양육과 보호	67
2-5. 프로그램 참여의 자유	69
2-6. 정신건강 관련 지원체계	71
2-7. '아동'을 중심에 둔 일관된 지원체계	72
2-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영	74

3. 자립지원 • 76

3-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76
3-2.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78

5부. 인권 기반 노동환경 조성 • 81

1. 노동인권과 아동인권의 관계 이해하기 • 83
2. 아동복지시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3대 책무 • 85
3. 아동복지시설 인권 기반 조직 운영 방안 • 88

참고문헌 및 부록 • 93

참고문헌 • 94

부록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국문 번역본) • 97

부록 2.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국문 번역본) • 117





제 1 부

도입

1부 _ 도입



“세상에 아이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신성한 신뢰는 없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복지가 보호되며, 아동의 삶이 두려움과 욕구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무는 없다.”

코피 아난(1938-2018)

1. 안내서의 필요성

♥ 대안양육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이해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지만, 발달기에 있는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돌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데, 원가정이 아동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때, 국가는 원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대안양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양육은 가정위탁, 입양,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포함합니다.

대안양육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상황에서만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리의 적합성도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대안양육을 제공하는 양육자와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환경을 보장하는 것, 부득이하게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까지 아울러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과 같은 환경보다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대안양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호기간 또한 단기적이고 임시적이기보다는 장기간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아동권리에 기반한 대안양육의 실천 방향

우리나라에서 대안양육이 시설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안양육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서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안양육은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는 일시적 보호조치입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원가정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인권 실천을 위한 대안양육의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양육 제도는 원가정과의 관계에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아동의 양육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동인권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원가정과 대안양육이 갖춰야 할 조건은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권리협약은 보편적 아동인권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기에, 대안양육이라는 현실의 구체적 상황에서 적용하기에 다소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이하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입니다. 2009년 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기념하며 채택된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또는 양육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및 관련 국제조약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을 통해 아동권리에 기반한 바람직한 대안양육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안내서의 목적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과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에 기초하여 대안양육 관련 정책과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안양육의 기본 원칙과 내용들이 어떻게 도출되었으며, 아동인권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안양육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이 제한적으로만 이해되는 현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안양육은 아동의 권리이며, 대안양육의 모든 단계는 아동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안양육 현장의 종사자들은 대안양육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모두를 위한 인권의 관점에서 대안양육을 다시금 생각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구성 및 내용

이 안내서는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대안양육을 위한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부는 안내서를 개발하는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안내서의 활용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합니다.

2부에서는 아동인권과 대안양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의 아동보호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의 양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조화된 제도

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대안양육이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과 시행에 관한 틀을 제대로 갖추는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부는 대안양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4가지의 인권 원칙(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 참여 및 의견 존중)을 안내합니다.

4부는 종사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인권 이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크게 원 가정 보호, 양육 및 자립 지원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인권 이슈는 무엇이고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지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¹⁾ 이를 통해 대안양육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자원의 제약, 시설 양육의 특성, 다양한 아동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종사자는 아동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종사자와 아동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대부분 대안양육의 방식과 열악한 업무환경 등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종사자가 일하기 힘든 노동환경은 곧 아동의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사자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이 아동인권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연대할 필요를 제안하였습니다.

1) 안내서에 제시된 인터뷰 자료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인용한 발언은 달리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정책 정보-인권정보 정책-공보/발간자료-기타 발간자료, 게시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등록일 2022.01.1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안내서의 활용 방안

이 안내서는 대안양육에 관한 정책 관계자, 학계 전문가, 그리고 보육사 및 사회복지사 등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 안내서의 2부와 3부의 이론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은 그룹홈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아동보호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가정 기반 양육환경 조성 및 아동과 원가정의 재결합을 목표로 합니다. 원가정과 대안양육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이해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룹홈이나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대안양육 현장에서 아동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들은 안내서 2부와 3부에 제시된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관련 개념과 함께 4부의 다양한 실천적 이슈에 중점을 두고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아동인권

2부 _ 아동인권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집단이며

아동의 성장, 안녕 및 보호를 위한 자연적 환경이므로,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받거나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 양육을 받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한다.”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A/RES/64/142), 제3항

1. 인권과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는 만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말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다르지 않으며, 인간이기에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성인에 이르는 일정한 시기까지 연령과 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권리 침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기에,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보호·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무 이행자(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국가, 국제사회 등)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의 책무가 요청됩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 정의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권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까지 채택된 국제인권조약 중 가장 많은 196개 국가가 비준하였다는 점에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1991년 11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아동권리협약은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내 헌법재판소 결정 및 주요 법원 판결에서도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서 그 근본정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 최우선 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 존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의 증진에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 법률로 보장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규범의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아동관련 법제를 통하여 아동권리의 구체적인 실체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아동을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소극적 시각을 벗어나 아동을 아동권리의 차원에서는 하나의 능동적인 권리주체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아동의 대안양육이란?

♥ 아동과 원가정

아동과 부모로 이루어진 원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며, 발달기에 있는 아동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과 유엔 아동의 대안 양육 지침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 원가정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전문」가운데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안녕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

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본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부모가 모두 일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아동 돌봄 시설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원가정 보호’가 법·제도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보호조치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가족과 계속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의 원가정 분리와 대안양육

원가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이 아동을 제대로 보호·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대안적인 양육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²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2021년 기준 보호조치가 결정된 아동은 총 3,657명인데,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은 학대(47.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이혼 등(11.4%), 미혼부모·혼외자(10.4%), 부모 사망(8.1%), 비행·가출·부랑(7.9%), 부모 빈곤·실직(5.4%), 유기(3.6%), 부모 질병(3.1%), 부모 교정시설 입소(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원인 이외에 부모가 이혼해서, 한부모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보호조치는 정말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일까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대나 유기 등 예외적인 경우로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³이라고 결정되지 않는 한 아동은 그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은 원가정의 ‘재정적·물질적 빈

2)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4항.

3)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고 규정합니다. 즉, 협약 제3조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검토했는지에서 나아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에 본 안내서는 협약 제3조를 ‘아동 최상의 이익’으로 번역하되, 최우선의 개념을 더불어 언급할 경우, ‘최선의 이익’이라 서술하였습니다.

관'으로 아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⁴ 만약, 원가정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이가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그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혼이나 실직, 빈곤 등으로 아동의 보호조치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비롯해 대안 양육의 아동인권 원칙이 실천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⁵

단위: 명, (%)

연도	합계	유기	미혼 부모 ·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 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
2021	3,657	130 (3.6)	379 (10.4)	-	289 (7.9)	1,733 (47.4)	198 (5.4)	297 (8.1)	113 (3.1)	101 (2.8)	417 (11.4)
2020	4,120	169 (4.1)	466 (11.3)	11 (0.3)	468 (11.4)	1,766 (42.9)	181 (4.4)	279 (6.8)	75 (1.8)	166 (4.0)	539 (13.1)
2019	4,047	237 (5.9)	464 (11.5)	8 (0.2)	473 (11.7)	1,484 (36.7)	265 (6.5)	297 (7.3)	83 (2.1)	-	736 (18.2)
2018	3,918	320 (8.2)	623 (15.9)	18 (0.5)	231 (5.9)	1,415 (36.1)	198 (5.1)	284 (7.2)	92 (2.3)	-	737 (18.8)
2017	4,125	261 (6.3)	847 (20.5)	12 (0.3)	227 (5.5)	1,442 (35.0)	223 (5.4)	279 (6.8)	87 (2.1)	-	747 (18.1)

아동권리협약

제9조

1.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처 결정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4)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5항.

5) 통계청,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제20조

1.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했거나 가정환경에 남아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이슬람법의 카팔라, 입양,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다. 대안양육을 모색할 때는 아동의 양육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유엔총회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2010)⁶⁾

- 대안양육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아동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보는 것을 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재결합할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교육·문화·사회적 삶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 비공식 돌봄을 포함한 대안양육에 있는 아동에 대한 결정은 영구 보호를 핵심적인 목표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보장하고, 안전과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유대감 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 아동은 항상 존중받고 존엄성을 인정받는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육자, 또래 또는 제3자에 의한 학대, 방임 및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혜택을 받아야 한다.
- 가정에서의 아동 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일시적이며 최단기간이어야 한다. 분리 결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아동 분리의 원인이 해결되었거나 소멸되어 부모의 양육을 다시 받는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고 본 지침 49항 관련 사정을 준수한다.
-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하거나 대안양육에 배치하거나,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막는 유일한 이유가 재정적·물질적 빈곤, 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 이어서는 안 된다.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6)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1-23항.

-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교육, 보건 및 기타 기본 서비스, 정체성의 권리, 종교 및 의사 표현의 자유, 재산·상속의 권리를 포함하여 특별히 관련된 모든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확실한 위험 또는 아동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원칙적으로 대안양육 시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을 분리하여 배치하면 안 된다. 형제·자매의 바람 또는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동은 친척 및 다른 보호자에 의해 비공식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국가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문화적·경제적·성별 및 종교적 차이와 실천을 존중하여 비공식 돌봄을 받는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지침과 일관된 적절한 수단을 개발한다.
- 법정대리인 또는 책임감 있는 어른 또는 담당 공공기관은 항상 모든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한다.
-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목표 강화가 절대로 대안양육자의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특히 3세 미만을 포함한 어린 아동의 대안양육은 가족 중심의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형제·자매와의 분리 예방, 응급 상황에서의 배치,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이 예정되었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기적 돌봄이 이미 정해진 극히 제한적인 기간 동안의 대안양육 해결책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 대규모 양육시설과 가족 중심의 돌봄이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시설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토대로 전반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바탕으로 대안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맞춤형 및 소그룹 돌봄 등과 같이 아동 발달에 유리한 서비스 품질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양육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시설을 점검한다. 공공 또는 민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양육시설 설립 또는 허가 결정은 탈시설화 목표와 전략을 온전히 고려한다.

♥ 대안양육에서의 아동의 인권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 또한 원가정에 살아가는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나, 가정의 전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는 아동에 비해 권리 향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

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와 친인척 등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 어린이집·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적 환경, 건강과 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의 전반적인 일상은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요? 관계의 정도에서 개별 아동은 온전히 존중받으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원가정을 벗어난 양육환경에서 아동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신중히 검토하고, 확인 및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원가정 분리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 국가의 대안양육 이행 의무를 제시하여, 예외적이고 후차적인 수단으로만 시설보호가 고려될 필요를 말합니다.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도 국가의 원가정 지원 의무를 우선적으로 명시하며, 시설보호는 특별히 합당하거나,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아동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단생활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아동 개인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우며, 관리와 운영의 측면에서 규율과 통제가 우선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아동의 시설보호와 관련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우려사항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2005)

연구 결과 낮은 질의 시설 양육은 건강한 신체적 및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적응에, 특히 5세 이하의 아동뿐만 아니라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 기반의 혹은 가족과 유사한 돌봄에의 조기 배치가 유아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⁷

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2005) 영유아기 아동권리 이행(CRC/C/GC/7), 제36(b)항.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9호. 장애아동의 권리(2006)

돌봄의 목적이 교육이든 치료이든 재활이든, 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질적 수준은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있더라도 그 기준이 준수·감시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보살핌에 필요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기 일쑤이다. 시설은 또한 장애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성적 또는 여타 형태의 학대, 그리고 방치와 박대에 더 취약한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시설 위탁 방법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⁸⁾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의 피청취권(2009)

가정 내 학대 또는 방임의 피해자인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률, 행정규칙, 정책방향을 통해 아동이 위탁가정 또는 시설 배치, 양육 계획 수립 및 검토, 부모와 가족의 방문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사를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⁹⁾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2016)

국가는 기관(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민원 메커니즘 및 사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기관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는 또한 대안적 돌봄을 받는 청소년들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설을 떠날 때 직면하는 특정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처해야 한다. 대안적 돌봄에서 벗어나는 청소년들은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전환 준비, 취업, 주택 및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접근,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가족과의 재통합에 대한 참여 및 돌봄 후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 데 있어 지원을 받아야 한다.¹⁰⁾

♥ 대안양육의 결과: 원가정과의 재결합

대안양육에 대한 결정과 모니터링, 후속 조치의 모든 과정은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가정의 조건 및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CRC/C/GC/9), 제47항.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2009)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CRC/C/GC/12), 제53-54항.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2016) 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CRC/C/GC/20), 제53-54항.

따라 시설보호가 이루어진 때에도 가능한 일시적인 기간에 그치도록 원가정 지원과 교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즉, 대안양육은 항상 원가정과 관계 속에서 아동이 원가정과 재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도 대안양육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원가정과 재결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¹¹⁾ 아동은 대안양육을 받는 중에도 원가정과 교류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아동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 및 가정복귀는 노력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동이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분리의 원인이 되었던 사정이 해결되는 것을 포함해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안양육을 제공하는 현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체계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결과입니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보호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동을 중심에 둔 대안양육은 아동인권이 실현되는 가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관심, 자원의 투입이 있을 때 비로소 실천될 수 있습니다.

11)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3항.

3.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 국내 아동복지정책의 변화

국내에서 아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해되는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구「아동복지법」¹²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어,¹³ 민간 중심의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에 대한 구호적 성격의 복지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1년 4월 13일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¹⁴은 보호 대상의 범위를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며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확장되었으나,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라 비판받을 만큼 긴 시간 많은 아동을 해외에 입양 보내는 등 아동을 중심으로 둔 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뒤, 「아동복지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다소간의 개정이 있었고(2000년),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와 효과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2011년) 등 아동보호체계는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를 앞두고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선포하며,

12) 1961년 12월 30일 제정, 1962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912호.

13) 구「아동복지법」 제1조.

14) 1981년 4월 13일 전부개정, 1981년 4월 13일 시행된 법률 제3438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작된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보호대상아동의 초기상담과 보호조치를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와 원가정 모니터링, 부모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할 의무도 명시되었습니다.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민간에 의존하고 있던 입양 체계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도 시작되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단계부터 보호 종료까지 아동을 중심에 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도 강화되었습니다.

Q&A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란?



-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정책이 고려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제3조 제1호), 출생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호대상아동”이란 용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넓은 의미로는,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이혼·수감·실직, 이주배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위험이 높아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체계 행정에서 ‘보호아동’과 혼재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 다만, 이러한 용어는 아동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당사자의 주체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한 것도 용어에 담긴 당사자성을 강조한 변화입니다. 아동정책 전반에 아동의 권리주체성이 확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보호아동)’의 명칭 변경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Q&A

이주아동도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나요?



- 아동복지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국인·외국인 아동을 포함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은 적용 대상 아동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록한 외국 국적 아동'에 제한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아동의 국적을 법률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현행법이 명시하는 학대피해아동입니다.¹⁵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 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¹⁶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필요한 법률과 규정을 제·개정하지 않는 것, 법률과 규칙을 부적절하게 시행하는 것, 아동폭력의 확인·예방·대응을 위한 물질·기술적·인적 자원과 역량을 불충분하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협약이 명시한 아동권리 보장에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지 않는 것도 제도·체계상의 아동권리 침해(Institutional and system violations of child rights)라 강조하였습니다.¹⁷ 이에 따르면, 체류 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황에 있는 이주아동도 국내에서 출생등록과 신분증명이 불가한 경우로서 넓은 의미에서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서비스 실무에서는 학대피해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 미등록 아동 등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현행법체계에서 제공 가능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 국적 아동의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 등¹⁸, 여전히 이주아동의 보호체계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체계와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보호체계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 억압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¹⁹입니다. 국가의 아동보호 책무는 법률 및 정책, 국가조직 등 구체적인 제도화를 통해 이행되는데, 이를 아동보호체계라고 합니다.

1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인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해당한다.

16) 「출입국관리법」 제25조.

1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CRC/C/GC/13), 제32항.

18)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208쪽.

19) 김희진(2021). 아동권리 관점에서 바라본 개편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와 과제.

대안양육에 관한 아동보호 서비스는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해 가정위탁이나 그룹 홈, 아동양육시설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보호)를 목적으로 아동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대리보호 서비스와 친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영구대리보호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²⁰ 즉, 대안양육은 일시대리보호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나, 부모의 사망이나 원가정 해체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 영구적인 가족을 찾아주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대안양육의 결정은 아동을 중심에 두고 판단되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원인,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인 특성 및 경제적·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Tips! 아동보호서비스의 주요 내용²¹



아동보호서비스는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구를 포함해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굴된 경우에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합니다. 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아동학대 정보, 예방접종 미접종이나 의무교육 미취학, 장기 결석 자료 등과 같은 공공 데이터는 위기가동 사전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하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는 복지 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찾을 수 없는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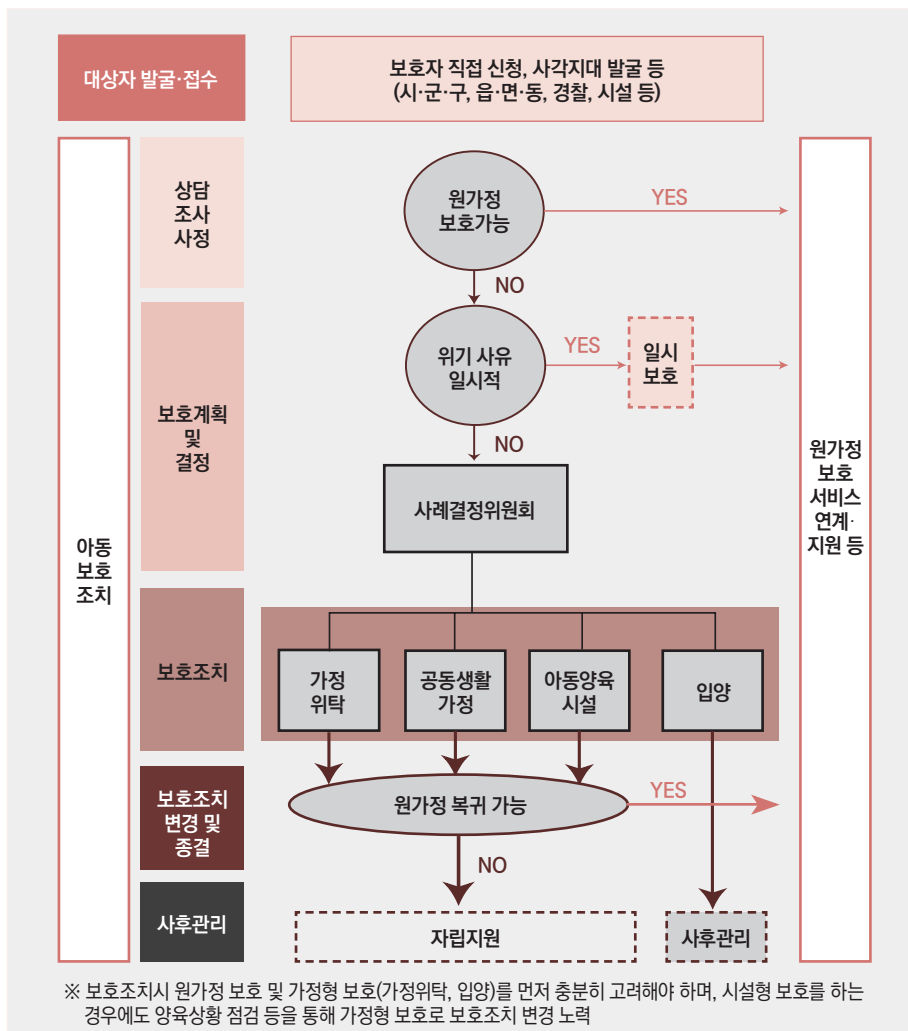
보호자가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결정에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보호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실시되어야 합니다.

20) 노혜련, 조소연(2016). 원가정 지원 원칙: 우리나라 대안양육 서비스에서의 실현 현황과 개선방안.

21)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6쪽.

아동의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적응 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양육상황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²²⁾



22)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62쪽.

아동보호의 종료: 사후관리 및 자립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나 시설 퇴소는 보호의 필요성, 아동의 욕구와 필요, 개별적 여건과 능력, 서비스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편된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시설 퇴소를 비롯한 보호조치 종료는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결정됩니다.²³⁾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²⁴⁾ 재학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자립지원 단계〉²⁵⁾

단계별		서비스 내용
1단계	입소(위탁) 상담	●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복귀 계획 수립
2단계	입소(위탁) 결정 후	● 건강, 지능, 사회성, 심리, 학습 관련 통합 사정 실시 ● 통합 사정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배치
3단계	시설(위탁가정) 적응 기간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단계	적응 기간 경과 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센터) 내 사례관리회의 - 자립·건강·심리·학습 등 관계자 참석

23)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1조의5.

24)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25)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7쪽.

단계별		서비스 내용
5단계	사례관리 회의 후	● 아동별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 - 1~4단계의 내용을 반영 - 원가정 유대강화 서비스 포함 - 경계선 지능 등 자립 취약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개입 계획 수립 ● 5단계의 아동별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에 기반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6단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	● 만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 포함 ●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자립지원] 메뉴에 입력(http://www.w4c.go.kr)
7단계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 보호아동에 별도(1인실) 공간 제공을 통해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8단계	보호 종료 전 점검	●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점검 ● 대학 진학, 취업(예정) 유무, 등록금 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 취약아동의 자립준비 기간이 필요할 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연장보호 검토
9단계	보호 종료	●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10단계	사후관리 및 상담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를 위한 기관 내 업무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향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시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및 자립 수준평가 실시

특히 기존 법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나이부터 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지원청년’으로 변경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수당과 자립준비정착금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²⁶ 발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립은 단지 시설보호 기간을 늘리거나 일정한 형태의 자립교육만으로 손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원가정에서 자라난 아동보다 인적·물적 지지체계가 취약하고 불리한 상황입니다. 즉, 아동의 자율적 삶에서 주도권을 인정하는 대안양육환경 조성, 원가정 교류를 포함한 안정적인 지지체계 확보 등 건강한 자존감을 토대로 삶에서 예상되는 도전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심적 상태를 응원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일상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보호조치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까지, 아동의 긍정적 자라남을 염두에 둘 때, 비로소 안전한 ‘보호종료’가 결정될 수 있고, 제대로 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07.1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제3부

대안양육 종사자의 업무 원칙

3부 _ 대안양육 종사자의 업무 원칙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방정환(1899-1931)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권리의 존중·보호·실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협약의 4개 조항을 지칭하여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이라 하였습니다.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4개의 조항은 비차별(제2조),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 생명·생존 및 발달(제6조), 그리고 참여 및 의견 존중(제12조)입니다. 일반원칙의 각 조항은 아동의 권리가 각각의 상황에서 온전히 존중되었는지 점검하는 요소로,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3부와 4부에 수록된 ‘인터뷰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1. 비차별(Non-Discrimination)

아동권리협약 제2조가 명시한 ‘차별 금지’는 모든 인권의 개념을 관통하는 원칙입니다. 아동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나이가 어려서, 발달이 늦어서, 친부모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달라서 등으로 인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차별의 원칙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소수자를 위한 원칙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원칙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차별의 원칙은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결과의 형평’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학생이 체벌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적 지위를 갖춘 교사는 학생보다 더 큰 권력과 자원을 가졌기에, 권리 주장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학생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학급의 인원수와 교원의 업무량 조정, 교원의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교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일절 금지되었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의 아동 양육과 돌봄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로 지적되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개별적 성향과 특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업무 여건, 아동에게 적절한 지도와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위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나의 일을 사랑하고 기

꺼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환경 등으로 지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타인의 권리 존중을 조력하는 일은 나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차별의 원칙은 궁극적으로 모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배려와 연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연령과 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차별의 취약성에 공감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돕고, 사회의 긍정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A

시설 종사자의 인권이 아동인권 보장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필수인력은 시설장과 보육사이고, 0~2세 아동은 2명당 보육사 1명, 3~6세 아동은 5명당 보육사 1명,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보육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²⁷ 그러나 최대 7명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대체로 시설장 1명과 보육사 2명이 종사하는데, 3명이 1일 24시간/주 7일을 나누어 근무하는 결과, 사실상 시설 내 돌봄 인력은 1명인 구조입니다. 아동양육시설도 7~10명 내외의 아동을 보육사 1명이 돌아가며 돌보는 실정이며, 시설 유형별 아동 인원수 대비 필수적인 법정 배치기준조차 충족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보호자와 다른 역할을 해야 할 종사자 1명이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다수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시설 내 상시적인 인력 부족은 곧 종사자의 소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종사자의 처우를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었을 때 비로소 시설보호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터뷰 내용)



“야간에는 1명이 근무를 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난다든가, 해열제로는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한 명이 종사하면 응급실을 가기가 너무 힘들니까. 시설장이 온다거나 다른 직원이 출근을 해야 한다든지,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을 보고 한 명이 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적어도 2인 1조는 되어야...”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 기준(제52조 관련).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이 상담을 좀 많이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원내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으세요. OO(타 지역)도 가면 왔다 갔다 이동시간만 한 3~4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종합심리검사받으러 □□(타 지역)도 가야 하고. 아이들은 많고, 조금 어려움이. 또 간호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면 또 가야 하는데, 그러면 생활지도원들이 각 방에 아픈 아이들 데리고 병원으로 나가야 하고. 근데 1일 2교대니까 한 선생님이 나가면, 그 방은 옆방 선생님이 케어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원래 생활복지사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고, 임상심리상담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에는 임상심리상담원이 있는 곳이 극히 드물어요.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구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항상 이 인력에 대해서는 후순위예요.”

2. 아동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아동 최상의 이익”의 개념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 또는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을 최우선(primary)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을 둘러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유념해야 할 원칙으로, 아동권리협약은 입법·행정·사법기관은 물론,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아동 최상의 이익은 협약에서 인정된 모든 권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권리들 간에 위계서열은 없으며,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는 “아

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권리도 아동 최상의 이익을 명목으로 간과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²⁸

예컨대, 훈육과 교육,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하거나, 일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와 같이 흔히 아동을 위한다는 성인의 판단과 행동이 아동의 존엄성과 인권에 반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성인의 판단이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²⁹

● 실체적 권리로서의 “아동 최상의 이익”

협약상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이 처한 상황과 맥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을 천명하였듯, 존재의 동등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과정에 아동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나 선박 침몰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는 아동과 노인, 여성을 먼저 구조하라는 원칙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건장한 남성, 그리고 승무원과 선원의 생명이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탈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이들을 먼저 구조하는 것이 모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이며, 안전한 운항과 항해를 위한 훈련된 종사자들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

2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 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C/GC/14), 제4항.

2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CRC/C/GC/13), 제61항.

원을 분배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마땅히 목소리가 닿기 어려운 아동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결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 최상의 이익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결정 과정에 상이한 이익들이 고려될 때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평가하고 채택하게 하는 아동의 권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아동 개인,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집단의 아동 또는 아동 일반과 관련하여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그 권리가 이행되도록 만드는 보장사항입니다.³⁰

● 해석상 기본적 법리로서의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가 하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합하는 해석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들은 이러한 해석의 틀을 제공합니다.³¹

● 절차 규칙으로서의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 최상의 이익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일은 절차적 보장책을 요구하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아동의 권리가 명시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아동, 확인된 아동 집단 또는 아동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그 결정 과정은 아동 또는 관련 아동에게 미칠 결정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³²

3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 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C/GC/14), 제6(a)항.

3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 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C/GC/14), 제6(b)항.

3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C/GC/14), 제6(c)항.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은 마땅히 아동의 의견에 기반해야 하지만, 제안된 해결책은 아동이 원하는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종사자들은 아동과 계속하여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한계가 있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 또한 아동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은 준비와 실천, 모니터링을 통한 과정적 개념이며, 아동은 종사자와 함께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만을 생각하라는 이기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시설 내 아동의 인권과 종사자의 인권이 더불어 존중되기 위한 상호 연대의 요청입니다.

★ Tips! 아동 최상의 이익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³³



① 아동의 견해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거나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② 아동의 정체성

아동은 동질적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평가할 때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정체성은 성별, 성적 지향, 출신민족, 종교와 신앙, 문화적 정체성, 개성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③ 가정환경의 보존 및 관계 유지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분리는 아동이 조만간 위해를 당할 위험에 처하거나 여타 불가피한 경우에 최후의 조치로서만 행해져야 한다. 분리에 의존하기 전에, 국가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가족의 보살핌 능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적 이유는 아동

3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13)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 사항으로 할 아동의 권리(CRC/C/GC/14), 제52-79항. 본 안내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의 일부만 발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과 부모의 분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 분리가 불가피해질 경우, 의사결정자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아동이 부모 및 가족(형제와 친척, 그리고 아동과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가진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④ 아동의 돌봄과 보호 및 안전

아동 최상의 이익 평가는 또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고려, 즉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성희롱, 또래압력, 집단 따돌림, 굴욕적인 대우 등으로부터, 그리고 성적, 경제적 및 여타의 착취, 마약, 노동, 무력분쟁 등으로부터의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⑤ 취약한 상황

장애, 소수집단 소속,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신분, 학대 피해자, 길거리 생활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특정 아동 최상의 이익은 각각의 상황에 있는 아동의 독특성에 의거해 평가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자는 각 아동이 갖고 있는 취약성의 상이한 종류와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결정하는 목적은 협약상 규정된 모든 권리의 완전한 향유는 물론, 장애인권리협약, 난민지위협약 등에 포함된 것과 같은 특정 상황과 관련된 여타 인권규범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⑥ 아동의 건강권

아동의 건강권과 건강 상태는 아동 최상의 이익 평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항이다.

⑦ 아동의 교육권

유아교육, 비정규 또는 비공식 교육과 관련 활동, 무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속한다.

3. 생명·생존 및 발달(The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아동의 생명권을 명시하여, 아동의 존엄한 생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아동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국가라 해도 아동의 생사를 멋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동반자살’은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 침해 사실을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제6조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도 규정하는데, 이때의 ‘발달’이란 비단 신체적·정신적 성장만이 아닌 한 사람이 자라나는 모든 시간이 온전히 존중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생존 및 발달의 권리가 충실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아동의 존재가 독립적 인격체라는 점과 함께 발달과정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의 삶에 있어 자율성을 확장하는 모든 의지와 노력을 기꺼이 지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망, 예측할 수 없었던 위기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생활시설의 관리자가 통제하는 보호 환경에서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개인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성인이 된 직후 혼자 알아서 잘 살아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동이 한 사람으로 나만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노력이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4. 참여 및 의견 존중(The view of the child)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만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그 의견을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란 아동의 가정과 학교생활은 물론,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영향의 정도와 관계없이, 아동은 삶의 주인으로서 나와 관련된 선택지에 관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참여와 의견 존중의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아동은 물론 성인의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아동들은 자신에게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들려질 권리가 있음을 알고, 실천해야 하며, 성인은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에 적절히 고려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시설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배치, 위탁가정에서의 양육 규정,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청취는 모든 대안양육체계 배치와 처우에 관한 계획에 있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모든 과정에 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견해가 의사결정 과정에 정당한 비중을 두고 고려되는 것, 아동 친화적인 양육 서비스를 마련할 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보장하는 것, 나아가 아동참여기구(자치기구)의 제도화, 역량을 갖춘 모니터링 기관 구성 및 아동의 양육, 보호, 처우에 관한 규정과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합니다.³⁴ 시설 내 아동의 참여권 보장이 마땅히 보장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따른 쌍방향적 교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협약 제12조의 권리는 무조건 ‘아동의 의견에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과 더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율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가 아닌,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이유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안내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3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2009)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CRC/C/GC/12), 제97항.

★ Tips! 아동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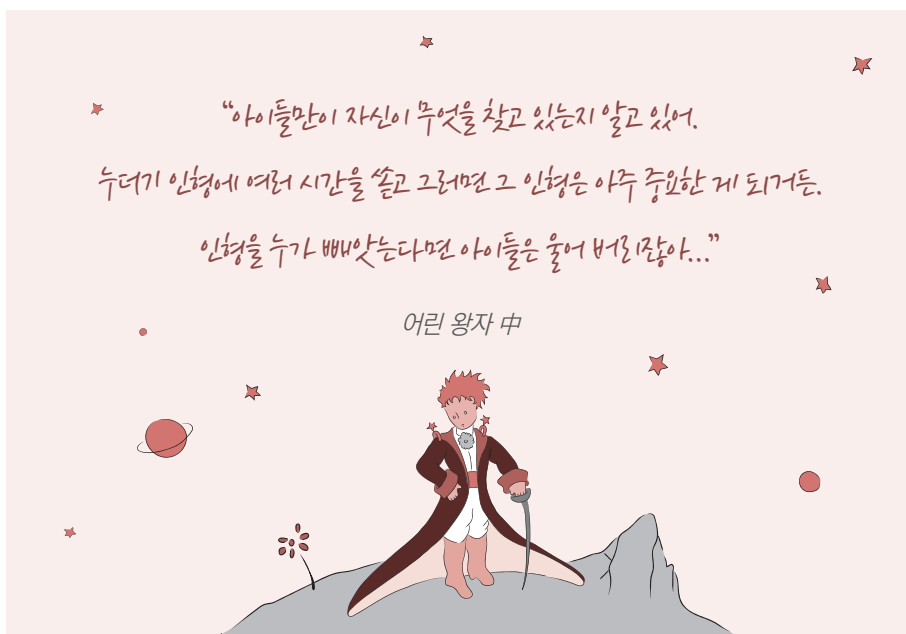
- (a) **투명성과 정보 제공** -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정당한 비중을 둘 권리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참여의 범위와 목적 및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는 완전하고 얻기 쉽고, 다양성에 민감하며 연령에 적합해야 한다.
- (b) **자발성** - 아동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표현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며, 아동에게 언제라도 참여를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c) **존중** - 아동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에게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아동과 함께 일하는 성인은 아동의 참여가 가정, 학교, 문화 및 업무 환경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아동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배경 역시 이해해야 한다.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개인과 단체는 공공 행사 참여와 관련한 아동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한다.
- (d) **관련성** - 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는 문제는 아동의 삶과 실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아동이 자신의 지식, 기술 및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자신과 관련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 (e) **아동 친화** - 제반 환경과 활동 방식은 아동의 능력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적절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여, 아동이 충분히 준비되고 자신의 의사를 공유할 자신감과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과 참여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f) **포괄성** - 참여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현존하는 차별을 행하지 않고 소외된 남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그리고 참여는 어떠한 이유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모든 공동체의 아동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g) **훈련을 통한 지원** - 성인은 아동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준비, 기술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 경청 기술, 아동과 합동으로 일하는 방법과 아동을 그들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다. 아동 자신이 효과적인 참여에 대해

3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2009)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CRC/C/GC/12), 제134항.

훈련하고 조력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회의 조직, 기금 조성, 대중매체 대처법, 연설 및 옹호와 같은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h) 안전성과 위험 민감성 - 특정 상황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성인은 함께 일하는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폭력, 착취 등 아동이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는 몇몇 집단의 아동이 겪을 수 있는 특정 위험과 그 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장벽을 인지하는 명확한 아동 보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곳을 알고 있어야 한다. 참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i) 책무성 -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사후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어떠한 연구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해석되고 반영되었는지를 알리고, 필요하다면 이익을 제기하고 연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본인의 참여가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적절한 경우 아동에게 후속 조치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참여했던 아동들과 함께 아동의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야 한다.







제 4 부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



“어린이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다.”

야누슈 코르차크(1878-1942)



3부와 4부에 수록된 ‘인터뷰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1. 원가정 보호

아동권리협약은 전문에서부터 아동의 권리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으로서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과 발달과 안녕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을 확인하며, 이에 국가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원가정이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대안양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시설양육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³⁶⁾ 따라서 친생부모가 존재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대안양육은 일시대리보호로서 원가정에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원가정이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적합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출생의 기록과 보존은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

“아동의 출생등록 여부는

한 사람의 삶 전반에 있어 모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A/HRC/39/30), 제81항

36)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21-23항.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되고, 가능한 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동의 원가정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뒷받침합니다.³⁷⁾ 정체성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합니다.³⁸⁾ 따라서 시설에 보호조치된 출생미신고 아동의 등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책무이며, 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의 뿌리가 온전히 기록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 인터뷰 내용)



“혼인관계에서 다른 자식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랑 이혼 절차를 밟고 계셨고, 그 도중에 사실혼 관계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엄마 형편상 애를 둘이나 자기 밑으로 넣어서 키울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빠는 연락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출생신고가 제일 기본인데, 그런 것보다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애를 자기 밑으로 넣었다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도저히 못한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찾아낸 게 검사님이 직권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 아동학대로 소송 걸고, 그런 걸로 기간도 제법 좀 길었어요.”

(시설종사자 인터뷰 내용)



“아동유기 발생으로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 5명 정도 돼요. 베이비박스도 아닌데요, 아이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영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구요. 저희가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찾고자 유전자 검사 의뢰해냈고, 실종신고 등록해냈고, 원가 일치되는 게 있으면 찾으려고는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7) 아동권리협약 제7조.

38)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정하고 있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부모가 아동을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태어난 아동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2016년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동법 제46조 제4항), 일선 행정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때의 직권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창설하는 기아의 성·본 창설과 다른 절차이며, 친생부모의 정보를 온전히 기록하는 공적 책무의 이행입니다.

Q&A

부모가 아동을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정하고 있어,³⁹⁾ 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태어난 아동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2016년 5월에는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부모가 기간 내(1개월)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으며,⁴⁰⁾ 이때의 직권 출생신고는 부모를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창설하는 기아의 성·본 창설과 다른 절차로서, 친생부모의 정보를 온전히 기록하는 공적 책무의 이행입니다. 더 나아가 2022년 3월에는 아동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출생미신고 상황에서 보호조치되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라면, 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아동보호팀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직권 출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미신고는 그 자체로 아동학대이며, 각종 사회복지체계에서 누락·배제될 수밖에 없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0년 6월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최초로 확인하였습니다.⁴¹⁾ 위 판결은 출생등록될 권리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에 한정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정한 경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간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할 때, 모든 아동의 권리로서 마땅히 해석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조력은 지자체의 구체적인 책무를 확인하며, 보다 신속한 출생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3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40)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

41)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1-2. 모든 아동은 원가족 교류를 원한다

“제 생각에는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충분하다면, 가정 내에서 불만과 좌절의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다음은 정서적 지지가 중요해요. 사랑, 지지, 안정감, 수용, 격려를 통해 가족을 돕는다면 사랑의 유대관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해요.”

네팔의 청소년, 여성, 18-25세⁴²

202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의 대안양육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토론([Day of General Discussion](#))의 날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발언은 원가정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동이 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 상실감이 커진 경우에도,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위안이 되는 사례는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안양육 결정 과정에 형제자매가 분리되지 않거나, 분리되더라도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상황을 지원하는 것도 아동의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합니다. 즉, 시설보호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권리란 ‘원가정 복귀’라는 행정적 조치와 판단 이전에, 아동이 평생의 삶에 기댈 수 있는 지지체계를 쌓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 원가정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조력하는 공공의 개입과 지원체계 개선은 곧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보장이기도 합니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42) MAKE OUR VOICES COUNT(2021), 19쪽.

(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애가 인제 나는 왜 없나 이게 근원이잖아요, 뿌리 찾기가. 찾아가는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지구 그 베이비시티(아동이 시설에 보호조치 되기 전까지 아동을 돌보던 사람)하는 분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하니깐 안 바뀌었더라고. 이름은 남겨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SNS를 뒤졌조, 막 뒤지면서 일일이 보고. 근데 알겠더라. 본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이 맞겠더라고. 그랬는데 딱 잡아떼요. 그래서 아니시라면 제가 경찰에 아버지를 찾는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랬더니만 그다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다. 나는 왜 엄마 아버지가 없나 그걸로 지금 심각하다. 그렇게 오게 만들어 가지고 두 번 만났어요.”

“한 아이는 중3 때 만취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들여다보면 속마음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이제 울더니 만 엄마 이름도 모르고 어릴 때 엄마랑 살았던 그 동네를 헤매고 이랬는가 봐요. 아버지가 연락이 끊기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도 연락 끊고 단절될 때가 중간중간에 많거든요. “엄마는 도대체 왜 나를 낳았을까” 이런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 엄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때도 애 엄마를 찾았거든요. 전화번호를 안 바꾸고 계시더라.”

1-3. 시설보호아동의 보호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지위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보여준다.”

피터 스텐스(Peter N. Stearns, 1936-)

시설보호아동의 과반수가 학대피해아동이며, 유기·미아·부모 사망을 이유로 보호조치된 아동 비율은 상당히 낮은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시설보호아동의 상당수는 친생 부모인 친권자가 존재하는 아동입니다. 여전히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친부모이며, 아동에 관한 각종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시설보호 중에도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 종사자들은 아동의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각종 행정서류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사후 모니터링

터링도 사실상 시설 종사자에게 떠맡겨진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안양육이라는 사회적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⁴³ 시설은 공공을 대리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조력자입니다. 친권자에 대한 개입과 소통, 필요한 경우 아동을 중심에 둔 권한대행을 통해 원가정 보호를 포함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지자체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시설 종사자와 보호대상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협력적·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Tips/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긍정적 사례⁴⁴



- 경북 포항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총 20회의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설 전원 여부, 아동 원가정 복귀 여부, 문제행동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여 공공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전달 체계를 광범위하게 연계·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월 2회 정례 개최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원들의 이해를 높여 실제적인 자문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 7월~10월 간 총 6번의 대면심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원가정에서 분리 보호가 필요했던 37명의 아동들의 보호조치에 개별 아동들의 욕구와 환경이 고려되었는지를 사전에 심의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후 보호조치의 질을 높였다. 더불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심리·정서 지원기관 15개소와 신속 연계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원예치료 등으로 보호대상아동 35명의 문제행동을 완화하며 정서 안정을 지원하였다.
- 서울 서대문구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처우 수준을 국비 지원기준보다 높이고, 모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회복지사 1급 및 아동복지 분야 등 7년의 경력을 갖춰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설보호아동 권익 보장을 위한 자체적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경 합숙모임, 서대문구-14개 동(洞) 간 교육·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인력들의 역량

43) 「아동복지법」 제15조.

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12.28.). 2021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서대문구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진로 탐색, 자립관 체험, 대학 및 기업체 탐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주거자립교육을 위해 징검다리주택·청년 임대주택을 방문하며, 부동산 공인 중개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 전북 전주시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그룹홈, 양육시설 대상 아동학대 인식 개선 교육(9회), 전담 요원 대상 아동보호 대응역량 합동 교육(5회)을 실시하였다.
- 충남 천안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정례화하여 7월~10월 간 총 11회 개최하여 보호조치 사전 심의를 추진하였으며, 전남, 인천, 경기 등 타 시군구에서도 우수사례로 참고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체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인정받았다.
- 충북 청주시는 희망복지팀·주거복지팀·청소년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교육지원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대내외 협업을 활성화하였고, 청주복지재단을 통한 자체 연구를 통해 청주형 아동보호체계를 모색하였다.
- 경남 창원시는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발생한 경우 대면상담을 필수화하여 7월~10월 간 친생부모 10명에 대해 총 56회의 대면상담을 제공하고, 국민행복카드·미혼모자시설·아동돌봄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며 출생신고·유전자검사·영유아 검진 등을 지원 및 동행하였다.

CHECKLIST

※ 아동의 원가정 보호 관련 체크리스트



이하의 체크리스트는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에 기초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⁴⁵ 각 점검 항목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 분리 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건이 고려되었는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동의 원가정 분리의 이유가 경제적·물질적 어려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되었나요?			
2	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의 적합성과 적절성은 지자체 사례관리 과정에 정기적으로 검토·심사되고 있나요?			
3	현재의 대안양육은 일시보호를 목표로, 원가정 복귀나 입양 등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나요?			
4	아동이 유기나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원가정 교류가 어려운 경우, 실종아동 신고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원가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5	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보육/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변경되었나요?			
6	아동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예: 학대)이 있지 않은 한, 아동이 원할 때 자신이 기존에 살던 거주지에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보호조치 되었나요?(아동의 연령, 대중교통 접근성, 지원인력 등 고려)			
7	시설은 대안양육에 배치된 아동이 원가정(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나요?			
8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에 원가정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나요?			
9	아동의 대안양육 배치 시, 형제자매가 분리되었나요?			
10	아동이 형제자매와 분리되었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나요?			
11	아동에게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양육기술 매뉴얼, 종사자 교육훈련, 외부 자원연계 등)이 조성되어 있나요?			
12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와 소통이 원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후견인이 있나요?			
13	아동의 후견인 선임·지정에 관한 사항이 지침이나 매뉴얼 등으로 잘 안내되어 있고, 필요시 절차 이용에 어려움은 없나요?			

45)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1-23항.

★ Tips! 체크리스트 활용 안내



- 대안양육이 시작된 경우에도 아동은 원가족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원가정 복귀를 통해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과 가족이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소통하며,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상황 개선에 도움을 받고, 아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함께하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원가정 보호와 관련된 지원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주체인 지자체가 적절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자체의 적절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점검 중 ‘아니오’라고 답하게 될 경우, 종사자의 업무를 돌아보는 것과 더불어 지자체와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의 경우, 개별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관심과 상호작용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력 부족, 행정처리를 포함해 실 틈이 없는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아동의 원가정과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호대상아동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하며, 양육상황 점검을 위한 시설 모니터링 및 원가정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것은, 명확한 목표와 계획하에 시설 종사자가 흔들림 없는 대안양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자체를 통해 원가정의 변화와 개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시설 종사자도 보다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지지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번 문항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영유아기 아동은 혼자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가족이 아동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 저학년 또는 장애아동이 가족을 만나고자 할 때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해 동행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있는지, 아동·청소년이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 노선이 마련된 곳에 시설이 위치해 있는지 등도 각각의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7번 문항은 아동이 직접 원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편지 등으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가족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인지, 또는 아동의 이동이나 통신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는지 등이 아울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 내에 아동이 원가족과 머무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다면, 지자체가 아동의 원가정 지원 및 사례관리의 관점에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2. 양육 단계

시설보호아동도 원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과 같은 권리를 갖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상실의 경험이 있기에 더욱 섬세하고 민감한 접근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과 국가의 부족한 정책 집행 속에, 이미 커다란 권리 침해가 발생한 아이들입니다. 아동기의 권리 이행이 중요한 이유는 발달단계의 과업이 계속하여 다음 발달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신체적·심리적·정서적·지적·사회적 발달이 큰 폭으로 일어나는 만큼 이를 회복하는 노력에 더 큰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가 경험한 대안양육에서는, 사람들이 종교, 문화, 신분, 사회, 가족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차별이 발생하면, 차별을 한 사람은 징계를 받았어요.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얘기할 수단이 있어야 해요.”

네팔의 아동, 남성, 15-17세⁴⁶

비차별은 인권의 대원칙입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와 관련된 어떠한 사유로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시설 거주 상황이 차별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

46) MAKE OUR VOICES COUNT(2021), 31쪽.

며, 시설 내에서도 위계와 권력관계 등으로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다른 생활환경 속에서도 마땅한 기본적 권리들이 지켜지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공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시설 거주 아동 인터뷰)⁴⁷



“어른들은 뭐냐 여기 있는 시설 같은 데 있었던 애들은 성공 못 한다고 거의 생각하하는데. … 그런 고정관념? 그런 거 깨고 성공하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랑 똑같이 아동, 쉼터 친구들, 아직 연락하고 있는, 쉼터에서부터 친구여서 아직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대요. 자기들은 이런 거 받을 때, 그냥 좀 그런 게 있대요. 애들은 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나의 입장이 되어 보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 조금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정? 그런 걸 동정심? 그런 눈빛으로 싫어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특별하게, 뭔가 대하는 것 같은 게 싫은 아이들도 있대요. 그런 게 싫고, 그냥 나는 보통 아이인데,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서 좀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좀 저도 옛날부터 만약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2-2. 종교의 자유

종교를 갖거나 갖지 않을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기본적 권리입니다.⁴⁸ 아동은 시설 배치와 관계없이 자신의 종교를 존중받아야 하고, 종교적 의식이나 교육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아동이 종교나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⁴⁹

47) 노혜련 외(2021). 서대문구 시설보호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질적 조사 결과 중 발췌.

48) 헌법 제20조 제1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 아동권리협약 제14조.

49)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88항.

(시설 종사자 인터뷰)



“처음에 설립된 건 기독교 기반으로 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약해졌죠. 예배를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옆이 교회인데, 안 가는 애들이 많죠. 만약 교회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있어요.”

“저희들 설립 취지는 기독교 정신이랑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만, 요즘은 종교의 자유, 인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교회 가고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어요.”

“저희는 교회를 매주 일요일마다 가고 있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아이들에게 “여기는 아무래도 종교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곳이어서,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일요일 하루만큼은 시간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해서 가고 있고, 간혹 한 번씩 사춘기가 와서 너무 싫어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친구와 충분히 이야기를 한 후에 “교회를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 네가 안 가는데 놀기만 하면 저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모두가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데 너만 빠질 수는 없다. 해서 정말 교회 가기 싫으면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지 않도록” 다른 시간을 주고 다른 애들은 교회를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2-3. 사생활의 자유

집단생활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개인적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온전히 존중되기에 어렵습니다. 더욱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명목으로 CCTV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경우도 많은데, 현행 법·제도상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의 CCTV 활용 목적과 활용 방안, 관리자·담당자 접근 제한 및 모니터링 기록 비치 등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화장실 내 CCTV는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창문만 모니터 하도록 위치 조정”을 권고하였는데, 생활시설의 CCTV 설치·운영은 거주자이자 정보주체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동의를 전제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A

공동생활가정에 CCTV를 설치하면 아동권리 침해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생활가정의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조사한 결과, 「헌법」 제17조, 제10조 및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호아동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점 등을 아동의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CCTV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것을 시설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⁵⁰

2-4. 적절한 양육과 보호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면서 국내에서는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단어에 갇든 인식의 변화를 위해 교육상 체벌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던 ‘훈육(discipline)’을 ‘긍정양육’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⁵¹ 아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경험을 통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실천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양육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과정으로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지도와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⁵² 그것이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여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부당한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고, 타인에 대한 폭력을 막아내며, 알고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의 의미를 설명하고 요청하는 지도와 안내는 마땅히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 속에 학대로 오인받지 않고자 하는 종사

5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10.22.)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5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긍정 양육 129원칙.

52) 아동권리협약 제5조.

자의 우려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적절한 양육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충분한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가정에 대한 지지가 중요한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주양육자로 일상을 같이 하는 종사자 또한 아동의 바로 곁에서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옹호가임을 기억하고, 아동을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양육자의 권위와 책무를 지지하는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Q&A

「민법」 915조 폐지 등 아동에 대한 징계는 절대 할 수 없나요?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부족하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 방임, 방치된 아동들을 위한 '집'입니다. 시설 종사자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육이란 혼내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로 아이에게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며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해서 협박과 폭행이 허용될 순 없듯, 체벌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수단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동 또한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바람직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15조의 폐지는 사실상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해석되던 법률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허용될 수 없다는 법적 규범을 마련한 것이지, 일체의 훈육과 양육 지도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이 생활규정의 징계에 '일시 귀가 조치'를 명시하고,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징계성 귀가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이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아동양육시설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 아동의 자기선택이나 아동 최상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동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징계도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존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양육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지는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는 폭력적 조치라고 본 것입니다. 아동의 원가정을 대신하는 아동양육시설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더욱이 아동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결정입니다. 징계 규정의 마련과 운영 전반에 아동의 의견청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⁵³

5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8.05.09.)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 Tips! 보호아동 발생 원인과 아동보호서비스의 관련성



2021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은 학대가 가장 많으며(47.4%), 그 다음으로 부모 이혼 등(11.4%), 미혼부모·혼외자(10.4%), 부모 사망(8.1%), 비행·가출·부랑(7.9%), 부모 빈곤·실직(5.4%), 유기(3.6%), 부모 질병(3.1%), 부모 교정 시설입소(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보호대상아동의 가장 큰 발생 원인도 학대(42.9%)로, 즉각 분리 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가 늘어난 경향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들도 과거와 달리 시설보호아동의 상당수가 학대피해아동이며, 이들 아동의 양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호자의 방임과 방치를 포함한 학대, 원가정에서 분리된 경험 등으로 큰 충격을 겪은 피해 아동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치료 등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현장 종사자들이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신체적·지적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 등에게 적합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경쟁적 교육 환경과 학업 위주의 성취평가가 우선시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은 사실상 '장애아동'과 다름없이 인식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개별 아동이 서로 다르게 자라는 속도를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및 발달의 기회가 제공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이죠.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서 알 수 있듯 시설보호아동의 상당수가 충분한 애착관계와 안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들의 발달적 특성은 환경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즉, 대안양육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갈음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할 수 있으려면,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를 비롯해 종사자의 업무환경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5. 프로그램 참여의 자유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국가정책의 한 형태로, 아동보호라는 목적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평가 지표를 충족해야 하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의 참여도는 평가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모든 시설이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

램을 계획·시행해야겠지만, 사전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 계획, 활동 내용 구성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은 마땅히 요청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여와 의견 교류를 통한 자유권은 ‘참여하지 않을 선택지’도 기꺼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터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교육들을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앉아서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고 힘들어해서.”

“예를 들어, 15~17세 자립 프로그램, 꼭 필수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아이들한테 “이건 필수야 애들아” 하고, 그것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은 “하고 싶은 친구들 있니?” 해서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Q&A

현행법상 아동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도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강제’가 되나요?



때로는 환경적 여건에서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는 의무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5대 의무교육(「아동복지법」 제31조), 인권교육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은 아동의 참여도가 시설 운영의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아동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는 참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안내, 협력의 요청을 통한 소통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교육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찾는 시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인권적인 제도 변화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자유의 존중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배려로 실천될 수 있다는 핵심가치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충분히 아동의 자유권 보장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6. 정신건강 관련 지원체계

시설은 서로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진 다수 아동이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불편함과 함께 구성원이 자주 달라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아동 대부분이 가정해체와 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분리된 부정적 경험이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달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에 배치되는 순간부터 원가정 복귀나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민감하게 모니터링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시설 내부에 상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Tips! 아동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⁵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대나 방임, 빈곤 등 사회적 문제로 입소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들은 피학대증후군, 연고자로부터의 분리 불안, 박탈감 등의 정신건강에서의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정신건강 관련 전문병원이나 상담기관의 치료 등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치료 기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신건강 분야의 특성상, 신체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치료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설의 종사자들이 시설 입소 이전 아동의 양육 과정이나 가정환경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치료와 지원 등이 적절하기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아동권리협약 제39조), 이는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권리 보장에 특별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건강 관련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의 불안 및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을 인지하여 적절한

5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6.11.17.)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

관리하며 필요시에는 전문병원 및 상담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2-7. ‘아동’을 중심에 둔 일관된 지원체계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결과, 면접조사에 참여한 종사자 대부분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경계선 지능 아동의 양육도 업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이들의 기초학습과 역량 강화를 돕는 자원 연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한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장애인 담당 부서) 사례 이관’하고, 다만 ‘사례 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에 협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을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보호할 경우, 아동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⁵⁵⁾

55)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78쪽.

2021년 매뉴얼에 ‘아동복지법 이외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 시설 등으로 보호조치를 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장애인 담당 부서)로 사례이관 후 시스템 종결처리’⁵⁶로만 되어 있던 것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아동이 장애인복지 체계에 편입되는 순간 기존의 아동보호체계로부터 단절되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더욱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록을 전제하는 결과,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발달기 장애아동이나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특수한 고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제한점도 있습니다.⁵⁷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이 직면한 장벽이 장애 자체이기보다는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그리고 태도 및 사고방식 상의 장애물들로 이루어진 결합물이며,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 전략은 바로 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⁵⁸ 즉, 시설보호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경계선 지능 등의 사유는 아동을 장애인복지체계로 이관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더하여 해당 아동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장애아동이 만약에 같이 이렇게 보육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특수 전담으로, 특수교사 선생님 같은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좀 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6)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1쪽, 94쪽, 125쪽.

57) 원혜옥 외(2021).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5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CRC/C/GC/9), 제5항.

“장애인 시설에 보내야 된다, 아니다 그 진짜 경계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인 시설에서 행복할까 여기서 행복할까. 어떻게 키워야지, 그 고민은 그냥 인간적인 고민으로 평생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사업이라고, 관련 사업이 있어서 담당 선생님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나마 그 교육으로 인해서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 행동에 대해서 좀 알고.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이왕이면 좀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게 그나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영

“세상의 정직한 말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에 의해 발설되고 있다.”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1841-1935)

국가는 시설에 대한 독립인권기구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고,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의견청취, 시설 방문과 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⁵⁹⁾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아동복지시설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시설의 특성상, 개별 아동의 권리가 소홀히 되고 침해될 우려를 예방하며 권리구제 접근성을 확보하라는 국제인권규범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⁶⁰⁾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보호를 최초로 시작할 때에 인권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고, 관련된 안내서를 시설보호아동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합니다.⁶¹⁾

59)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30항.

6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61)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200-201쪽.

다만, 아동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주거지에 누구나 어디 있는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7인 이하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규모가 훨씬 작은 만큼 진정서 제출에 따른 비밀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인권상황과 재배치 심사를 포함한 모니터링은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진정함 제도가 이용 아동은 물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되지 않고, 서로의 인권감수성을 깨닫으며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려면, 아동과 종사자가 진정함의 의미와 이용방안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종사자 인터뷰 내용)



“진정함을 달아 놓으라서 진정함을 달아놨는데, 투명 케이스를 해서 달아놓으니, 누가 거기에 (진정서를) 넣겠어요. 뭐 하나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보이고.”

“실제로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곳곳에 CCTV가 있다 보니까, 가면 내가 간 게 찍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진정함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여지고요. ... 실제로 그 좀 뭐 이거를 활용하자는 아이들도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기관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진정 제도는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고 기관 입장에서도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진정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선생님이 어려워서 말을 못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들도 종사자들도 이걸 조금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싫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은 생각을 해요.”

3. 자립지원

‘자립’이란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기 충족적이고 상호 협력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⁶²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깨닫는 전 과정입니다.⁶³ 즉, 권리주체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립 준비는 일정 연령에 이르는 어느 한순간에 체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경험 속에 삶의 형태를 재구성하고, 기획하는 마음가짐과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 강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상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시각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고 주체적인 결정을 지지받는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소를 앞둔 시설보호아동 693명의 자립준비도 분석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중 돈 관리 기술은 5점 만점 중 3.70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⁶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자립교육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으로 수령하는 목돈

62)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8쪽.

6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9호(2006) 장애아동의 권리(CRC/C/GC/9), 제64항.

64) 국가인권위원회(2019).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연구.

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례, 원가정의 지원금 갈취 등의 사례도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합니다. 이는 시설보호아동의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 부족과 취약한 지지체계, 심리·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는 퇴소를 앞둔 특정 시기가 아닌 삶의 모든 일상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립이란 연령에 따른 일순간의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발달과정에서 학습하고 체득하는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아동 인터뷰 내용) ⁶⁵



“혼자 살면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고,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걱정되고. 왜냐하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제때 잘 내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죠.”

“OO(참여자가 다니는 종교시설)에 나오는 형이랑 같이 일단은 살기로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알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경계선 그것도 있고, 자신감도 많이 없고, 처음 하는 일이면 좀 많이 두려워하는 편이라서 해본 일이면 제가 잘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가 아예 처음 접하는 게 뭐냐 좀 많이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 편이라 지금 조금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공과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통장관리라든가, 아니면 적금, 이런 것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 두려워지고. 지금은 청소 같은 것도 자기 방 아니면 이모들이 거의 하시거든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집에 갔는데, 더러운데 청소를 못 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생활적인 것? 딱 자립해서 나가 쓸 수 있는 거? 지금은 자립교육이라 해봤자 어느 집을 구할 것인가, 어디 가서 살 건가, 이거밖에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는 나가면 뭐 어디 집을 구해서 자유롭게 살 거다’ 이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교육이 좀 있으면 좋겠고, 제일 필요한 건 돈이죠.”

65) 노혜련 외(2021). 서대문구 시설보호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질적 조사 결과 중 발췌.

★ Tips! 보호 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 교육의 개선방향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은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기술의 8대 영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원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었다면 가정 내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 생활기술이나, 집단생활시설의 보호대상아동들은 이를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호종료아동이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하여 확인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용적 생활기술 등 자립 전반에 관한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주거·경제·사회적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주제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수동적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기보다 관련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참여교육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오프라인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온·오프라인 형태의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다양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⁶⁶

3-2.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합니다.⁶⁷ 그러나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251명 중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약 50.2%,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약 49.4%였으며, 자립준비도 분석 결과에서도 심리적·정서적 자립준비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50점으로 나타나 이

6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12.24.) 「보호종료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67)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와 관련된 자립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⁶⁸ 긍정적 심리정서,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성장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상처의 치유, 역경이 닥쳐도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탄력성 등을 갖추기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보호종료 후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종료 5년 이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Tips! 시설보호아동의 지지체계의 중요성



보호종료아동은 가족·또래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결핍되어 있고 정서적 애착형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우울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아동의 지지체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되,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서 개별적·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회적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면 통상적으로 위탁시설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정서적·심리적 차원에서 큰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존에 알던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종료 시점(만 18세 또는 연장 이후)과 관계없이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확신을 심리·정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커뮤니티 사람들과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⁶⁹

68) 국가인권위원회(2019).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연구.

6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12.24.) 「보호종료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제 5 부

인권 기반 노동환경 조성

5부 _ 인권 기반 노동환경 조성



“인권은 우리가 사는 주변, 작은 곳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

엘리너 루스벨트(1884-1962)

1. 노동인권과 아동인권의 관계 이해하기

♥ 시설 종사자의 노동인권 침해는 아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 침해는 아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 대안 양육은 양육자로부터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육자가 겪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결국 아동의 안전과 존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시설에서 노동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종사자는 휴직 혹은 이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사자의 잦은 변동은 아동 입장에서 양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고, 친밀한 관계를 통한 애착 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장은 아동의 인권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은 아동의 인권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아동인권은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실현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아동인권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시스템이 갖춰져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합니다. 아동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노동자를 감시 및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아동인권 보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몰입하게 하는 것, 이로써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인권 존중의 업무 환경이 마련될 때, 높은 수준의 아동인권 보장과 증진이 가능합니다.

♥ 복지시설에서 모든 구성원은 안전하고 존엄해야 합니다

헌법 제32조에서는 일터의 환경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도 일터이며 안전과 존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종사자의 안전과 존엄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존엄만 지키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니며 올바른 인권 실천도 아닙니다.

★ Tips! 종사자의 갈등관계가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아동양육시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외관상으로는 다하더라도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보육 종사자들의 갈등이 조속히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종사자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사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시설에서 제기된 진정 관련하여, 아동들이 위원회 면담조사 외에도 타 기관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 반복하여 진술하는 등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종사자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아동과 주 양육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동들에게 일관된 양육태도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를 확인하며, 아동들이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보았습니다.⁷⁰⁾

7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9.11.25.)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인권침해」.

Q&A

노동인권 실현을 가로막는 3가지 고정관념

● 노동인권만 강조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노동인권은 보장되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아동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설 종사자 안전 리스크 관리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인권 기반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할 때, 기관과 조직의 안정적 발전도 가능합니다.

● 노동인권만 강조하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의 노동인권 보장은 아동의 인권을 확대하고, 강화시킵니다. 인권 존중을 받아 본 사람이 아동의 인권도 더욱 잘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과 아동인권은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은 정부의 아동 보호 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입니다. 위탁 수행 기관은 정부의 인권보장 책무처럼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인권에는 종사자 노동인권도 포함됩니다. 후원하는 개인과 기관도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연루된 기관의 후원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아동복지시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3대 책무

① 노동인권을 존중합니다.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인권 침해와 연루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복지시설 운영자는 노동인권 침해 행위와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거나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노동인권 보장 기준은 국내법 준수, UN과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협약의

이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정립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인권을 보호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안전하고 존엄한 일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하듯, 노동자에게도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은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전을 포함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책임자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훼손당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피해 구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Tips!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위험의 식별



1. 아동 혹은 부모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공격에 대한 위험 대비
2.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따돌림, 배제, 성폭력 등 위험에 대한 대비
3.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병 발생에 대비
4.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

③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ILO와 헌법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의 실현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삼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Tips! 아동복지시설 노동인권 침해 사례



[경제적 권리 침해]

아동복지시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재단 후원금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中)

야근과 주말 근무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교사 노동조합 상담 사례 中)

[감정노동 대응 책무 소홀]

아동의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찾아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사무실 주변에 나타나는 등 위협적 환경을 조성했으나, 시설장이 민원을 우려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종사자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 경우(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中)

[적정한 휴식권 침해]

아동복지시설의 내부 행사를 위해 주말 근무를 강요하고, 연차 휴가 사용 시 사유를 적도록 하는 등 휴가 사용을 방해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된 사건(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中)

[인격권 침해]

원장에게 말대꾸하고 지정한 종교시설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의 인사도 받지 않고 사소한 일로 크게 야단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中)

[재생산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를 이유로 둘째 임신 계획을 미리 알리도록 요구하고 순번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육아휴직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례(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中)



[지나친 감시 및 통제]

실시간 CCTV를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 직원들을 감시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전화하여 “핸드폰 보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는 등 과도한 통제를 가한 행위(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中)

[노동조합 권리행사 방해]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이기적이다”, “사회복지에 왜 노조”, “노조 전임자는 일하기 싫어하는 무능력한 사람, 없어져야 한다”라는 등 노조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수개월간 지속하였고, 노조의 교섭 요구안에 대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제(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中)

3. 아동복지시설 인권 기반 조직 운영 방안

P/A/N/T/D/R/E

인권 기반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7가지 원칙

■ P(Participation): 지시 대신 참여

일방적 지시는 반발을 불러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었을 때 심리적 충족감이 배가 됩니다. 일터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기 뜻이 관철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A(Accountability): 통제 대신 자기결정 존중

권위적 조직 모델에서는 지시 및 통제가 중요합니다. 인권 기반 조직 문화에서는 자발적 참여와 자기결정 존중이 중요합니다. 해당 업무의 방법, 속도, 자원 동원에서 최대한 담당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의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 N(Nondiscrimination): 확고한 차별 반대 원칙

차별당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방법을 모르거나 그럴 처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문제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T(Transparency): 보상과 처벌은 투명하게

조직 내 불투명한 승진, 인사배치, 징계 등은 차별을 받는다는 의심과 오해를 낳습니다. 과정과 절차에서 투명성의 원칙이 지켜질 때 조직 갈등도 완화되고 조직을 신뢰하게 됩니다.

■ D(Human Dignity): 소중한 인간 존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체 가능한 부품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R(Rule of law): 모호한 것은 미리 정해 놓기

일터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갈등은 모호한 규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가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종사자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죠. 미리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일터 내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등 반인권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애매한 것을 규정 혹은 지침으로 사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 및 지침을 정할 때에도 참여와 존엄의 관점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E(Empowerment):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활성화

노동조합 혹은 직장협의회를 통해 노동인권 침해 대상자들의 자격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인권의 보장은 당사자의 적극적 요구와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HECKLIST

※ 일터 괴롭힘 자율진단 체크리스트⁷¹⁾

인권 기반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일터 괴롭힘이 발생할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초 점검사항

- | | | |
|----|---|--------------------------|
| 01 | 일터 괴롭힘, 갑질 관련 구제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있다. | ☐ |
| 02 | 일터 괴롭힘, 갑질 예방 교육을 1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 |
| 03 | 일터 괴롭힘, 갑질이 확대 행위 중 하나임을 알고 있다. | ☐ |
| 04 | 일터 괴롭힘은 직장 갈등이 아닌 노동인권 침해 문제임을 알고 있다. | ☐ |
| 05 | 피해자의 분리 요구, 공정 조사, 산재 신청 권리를 알고 있다. | ☐ |
| 06 | 가해자에게 징계, 분리, 교육 등의 처분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 ☐ |
| 07 | 일터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임을 알고 있다. | ☐ |



유형별 점검사항

- | | | |
|----|--|--------------------------|
| 01 | 법인 후원을 강요하거나 바자회 물건 기부를 강요한다. | ☐ |
| 02 | 신체적 위협행위 혹은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거나 던지려고 한다. | ☐ |
| 03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다. | ☐ |
| 04 | 다른 직원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준다. | ☐ |
| 05 | 종교 행사 참여 혹은 종교 행위를 요구한다. | ☐ |
| 06 | 외모·연령·학력·성별 등을 이유로 모욕감·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한다. | ☐ |
| 07 |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 혹은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 ☐ |

71) 직장갑질119 갑질 금지 TF(20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08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떠넘긴다.	☐
09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육아휴직, 복직 혜택을 쓰지 못하게 차별한다.	☐
10	모두가 꺼리는 업무나 허드렛일을 주로 시키거나 혹은 일을 거의 시키지 않는다.	☐
11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본인의 업무임에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한다.	☐
12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다.	☐
13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괴롭힌다.	☐
14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한다.	☐
15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휴일 야간 연장 근무를 강요한다.	☐
16	불법적인 회계 처리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다.	☐
17	상사의 관혼상제에 의무로 참석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도록 한다.	☐
18	정당한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뒷담화를 퍼뜨렸다.	☐
19	상사나 다수 직원이 나와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린다.	☐
20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을 반복하고 퇴사를 강요한다.	☐
21	기타()	☐





참고문헌 및 부록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9),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2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22),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2016. 11. 17.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 3.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22),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2020. 10. 22.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 3.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22),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2018. 5. 9.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 3.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22),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 인권침해(2019. 11. 25.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 3.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22),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 12. 24. 상임위원회 결정). 아동청소년인권 결정례집 2016-2022. 3. 국가인권위원회.
- 김희진(2021), 아동권리 관점에서 바라본 개편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와 과제.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2021.05.01.).
- 노혜련, 강정은, 김경희, 김유나, 김희진, 소라미, 김미애(2021), 서대문구 시설보호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아동의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2015), *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론*. 학지사.
- 노혜련, 조소연(2016), 원가정 지원 원칙: 우리나라 대안양육 서비스에서의 실현 현황과 개선방안. *아동과 권리*, 20(2), 223-25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12.28.), 2021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55>, 2022년 9월

29일 최종방문.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I].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III].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1.07.16.),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425&page=1, 2022년 9월 29일 최종방문.
-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전문영향평가.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긍정 양육 129원칙.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411&cntntsId=1355>, 2022년 9월 29일 최종방문.
- 원혜옥, 강정은, 마한열, 김재희(2022),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연구용역 보고서.
- 직장갑질119 갑질금지 TF(202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직장갑질119 갑질금지 TF.
- 통계청,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22년 9월 11일 최종방문.
- Butler. K., Currie. V., Reid. K. & Wright. L.(2021), MAKE OUR VOICES COUNT: Children and young peoples' responses to a global survey for the Day of General Disussion 2021 on Children's Rights and Alternative Care,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20/DGD_Report_EN.pdf, 2022년 9월 22일 최종방문.



-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CRC](2005), General comment No. 7(2005):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CRC/C/GC/7),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 CRC(2006), General Comment No. 9(2006):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CRC/C/GC/9),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 CRC(2009), General Comment No. 12(2009):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CRC/C/GC/12),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 CRC(2011), General comment No. 13(2011):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CRC/C/GC/13).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 CRC(2013), General comment No. 14(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art. 3, para. 1)(CRC/C/GC/14),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 CRC(2016), General Comment No. 20(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CRC/C/GC/20),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GA](2010),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A/RES/64/142), 아동권리보장원 번역본.
- UNGA. (2018), Best practices and specific measures to ensure access to birth registration, particularly for those children most at risk(A/HRC/39/30).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부록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국문 번역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대한민국 가입일 1991. 11. 20. / 적용일 1991. 12. 20.⁷²⁾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72) 유보: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1990년 9월 2일 유보철회, 조약 제1913호), 제21조 (a)(2017년 8월 11일 유보철회, 조약 제2361호) 및 제40조 제2항 (b)(v)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조약 제1072호).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⁷³⁾,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
-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
-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73)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한글 번역본에는 '무능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문상 표기된 'disability'는 '장애'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본 부록에서는 정정하여 수록함.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 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 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화·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서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c)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d)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b)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d)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e)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i)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iii)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v)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vi)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vii)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b)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8⁷⁴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74) "10"을 "18"로 대체하는 협약 제43조 제2항 개정 결의안이 1995년 12월 2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됨(50/155). 191개 당사국 중 128개국이 수락하면서 2002년 11월 18일 효력이 발효됨.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b)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b)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부록 2]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국문 번역본)⁷⁵⁾

64차 유엔총회 결의안 A/64/434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총회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재확인하고 200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며,

또한 가장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2008년 3월 28일자 결의 7/29, 2008년 9월 24일자 결의 9/13, 2009년 3월 26일자 결의 10/8 및 2008년 12월 24일자 총회 결의 63/241를 포함하여 이전에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위원회 및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대한 모든 결의를 재확인하고,

현 결의의 부록인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이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또는 그럴 위험에 놓인 아동의 보호 및 안녕에 대한 국제조약 이행 강화 목적의 정책 및 실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1. 현 결의의 부록으로, 본 지침이 정책과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을 환영하며,
2. 당사국이 본 지침을 고려하고 관련 행정·입법·사법부, 인권운동가·법조인 그리고 언론·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내길 독려한다.
3. 유엔 사무총장에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유엔의 모든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모든 회원국, 지역위원회 및 관련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에 본 지침을 배포하길 요청한다.

65차 본회의

2009년 12월 18일

⁷⁵⁾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번역한 국문 번역본을 수록함.

부록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I. 목적

1. 본 지침의 목적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또는 그럴 위험에 놓인 아동의 보호 및 안녕에 대한 국제조약 이행의 강화이다.
2. 본 지침은 관련 국제조약의 배경과 이 분야에서 축적되는 지식 및 경험 체계를 고려하여 정책과 실천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지침은 직·간접적으로 대안양육 관련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배포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다음을 지향하고 있다.
 - (a) 아동이 가정 내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원하고, 또는 여의치 않은 경우, 입양 및 이슬람법의 카팔라 시스템(Kafala of Islamic Law)과 같이 다른 적절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한다.
 - (b) 영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혹은 이러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아동의 온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장려한다는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대안양육 방식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c) 개별 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측면에서 맞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한다.
 - (d)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및 아동복지와 관련 있는 모든 공공과 민간 영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활동을 안내한다.

II. 일반원칙 및 견해

A. 아동과 가족

3.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집단이며 아동의 성장, 안녕 및 보호를 위한 자연적 환경이므로,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받거나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 양육을 받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한다.
4.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고, 지지적이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 부모의 양육이 부적절하거나,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이런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할 특별한 위험에 놓여있다.
5. 적절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거나, 아동을 유기 또는 포기한다면 국가는 소관 당국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또는 그들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안양육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소관 당국을 통해 대안양육에 배치된 아동의 안전, 안녕 및 발달을 감독하고 제공되는 양육 형태가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역할이 있다.
6. 본 지침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의사결정, 계획 및 접근 방법은 특히 아동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개별 사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고 성 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해당 아동 최선의 이익과 권리에 부합해야 한다.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에 따라, 그리고 아동이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아동의 의견을 물을 권리와 견해를 정당히 고려한다. 더불어, 아동이 선호하는 언어로 아동에게 의견을 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7. 본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결정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또는 그럴 위험에 놓인 아동을 위해 결정 당시와 그 후 장기적 시점에서 해당 아동의 가족·사회적·문화적 환경 속 온전하고 개인적인 권리 발달과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이들의 욕구와 권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방침을 구상하도록 설계되었다. 아동 최선의 이익 결정 과정은 특히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갖고 참여할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8. 국가는 본 지침의 원칙을 반영한 기존의 대안양육 개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국의 전반적인 사회 및 인력 개발정책 체계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 및 보호 정책을 개발



하고 시행한다.

9. 부모-자녀 분리를 예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는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조치를 강구한다.

(a) 장애, 약물 및 알코올 오남용, 토착 또는 소수민 가족에 대한 차별, 그리고 무력분쟁 지역 또는 군사점령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해 역량이 제한된 가족의 돌봄 환경을 지원한다.

(b) 학대 및 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유기아동, 거리의 아동, 혼외 자식인 아동,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 실향 및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의 아동, 망명신청자의 아동, 또는 HIV/AIDS 및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또는 영향을 받은 아동과 같이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제공한다.

10. 빈곤, 인종, 종교, 성별, 정신적·신체적 장애, HIV/AIDS 또는 기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혼외 출생, 사회·경제적 낙인, 그리고 그 밖의 아동을 포기·유기 또는 분리할 수 있는 모든 지위 및 상황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B. 대안양육

11. 대안양육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아동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보는 것을 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재결합할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교육·문화·사회적 삶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12. 비공식 돌봄을 포함한 대안양육에 있는 아동에 대한 결정은 영구 보호를 핵심적인 목표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보장하고, 안전과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유대감 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13. 아동은 항상 존중받고 존엄성을 인정받는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육자, 또래 또는 제3자에 의한 학대, 방임 및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혜택

을 받아야 한다.

14. 가정에서의 아동 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일시적이며 최단기간이어야 한다. 분리 결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아동 분리의 원인이 해결되었거나 소멸되어 부모의 양육을 다시 받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본 지침 49항 관련 사정을 준수한다.
15.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하거나 대안양육에 배치하거나,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막는 유일한 이유가 재정적·물질적 빈곤, 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16.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교육, 보건 및 기타 기본 서비스, 정체성의 권리, 종교 및 의사표현의 자유, 재산·상속의 권리를 포함하여 특별히 관련된 모든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17.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확실한 위험 또는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원칙적으로 대안양육 시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을 분리하여 배치하면 안 된다. 형제·자매의 바람 또는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18.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동은 친척 및 다른 보호자에 의해 비공식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국가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문화적·경제적·성별 및 종교적 차이와 실천을 존중하여 비공식 돌봄을 받는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지침과 일관된 적절한 수단을 개발한다.
19. 법정대리인 또는 책임감 있는 어른 또는 담당 공공기관은 항상 모든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한다.
20.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목표 강화가 절대로 대안양육자의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21.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2.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특히 3세 미만을 포함한 어린 아동의 대안양육은 가족 중심의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형제·자매와의 분리 예방, 응급 상황에서의 배치,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이 예정되었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기적 돌봄이 이미 정해진 극히 제한적인 기간 동안의 대안양육 해결책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23. 대규모 양육 시설과 가족 중심의 돌봄이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시설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토대로 전반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바탕으로 대안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맞춤형 및 소그룹 돌봄 등과 같이 아동 발달에 유리한 서비스 품질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양육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시설을 점검한다. 공공 또는 민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양육 시설 설립 또는 허가 결정은 탈시설화 목표와 전략을 온전히 고려한다.

지침 적용

24. 국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최대 범위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발협력의 틀 안에서 인적·재정적 자원을 배분하여 본 지침이 시의적절하게, 최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행 되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모든 소관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와 함께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 문제를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도 펼친다.
25. 국가는 본 지침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사항을 정하고 요청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요청은 정당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하고 적절한 때에 긍정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 본 지침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이를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포함한다. 외국 단체들이 다른 국가를 지원할 때 본 지침에 위배되는 계획 실행은 지양한다.
26. 본 지침의 그 어느 사항도 법률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기준을 장려하거나 용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소관 당국, 전문기관 및 기타 조직은 본 지침의 글과 의도에 기반한 국가적 또는 전문적으로 특화된 지침을 개발하도록 한다.

III. 범위

27.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조기에 성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한, 본 지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위한 공식 대안양육의 적절한 환경 및 활용에 적용된다. 본 지침이 비공식 돌봄에도 적용된다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모 또는 법적·관계적 양육자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의 확대가족과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 및 국가의 의무를 고려한다.
28. 적용되는 법에서 명시한 성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이미 대안양육의 적용을 받고 있었고,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돌봄 또는 지원이 필요한 환경 속 청년에게도 적용된다.
29. 본 지침의 목적에 따라, 30항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 (a)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유와 상황을 불문하고, 적어도 한 부모의 야간 돌봄을 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을 가리킨다. 본국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또는 긴급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i) 보호자 비동반 아동: 친척 또는 법률 및 관습에 따라 권한을 가진 어른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 (ii) 분리 아동: 과거의 법적 또는 관습적 주 양육자에게서 분리되었지만 다른 친척이 양육할 수 있는 아동
 - (b) 대안양육은 다음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i) 비공식 양육: 가족 환경에서 제공되는 사적 돌봄으로, 행정 또는 사법당국 또는 정당하게 승인받은 기관의 배치 명령을 받지 않고, 아동, 아동의 부모 및 기타 개인에 의해 친척 또는 친구(비공식 친인척 돌봄) 또는 기타 개인의 역량 안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무기한으로 제공되는 돌봄
 - (ii) 공식 양육: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법당국의 명령에 따라 가족 환경에서, 그리

고 행정 또는 사법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시설을 포함한 시설 환경에서 제공되는 모든 돌봄

(c) 대안양육은 환경에 따라 다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 (i) 친인척 보호: 아동의 확대가족 또는 아동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의 가까운 친구에게 위탁하는 가족 중심의 양육
- (ii) 가정위탁: 소관 당국에 의해 대안양육을 목적으로 아동이 자신의 가족이 아닌, 선택되고 자격을 갖추었으며 승인되고 감독을 받는 가정적 환경을 갖춘 가족에 위탁된 상황
- (iii) 다른 형태의 가족 중심 또는 가족과 같은 환경의 대안양육
- (iv) 시설 양육: 긴급돌봄을 위한 안전한 장소, 긴급사태에 대비한 임시보호 센터 및 그룹홈을 포함한 기타 장단기 양육 시설과 같이 비가족기반의 집단 환경에서 제공되는 양육
- (v) 감독을 받지만 아동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

(d) 대안양육의 의무는 다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 (i) 기관: 아동을 위해 대안양육을 준비하는 공공 또는 민간단체 및 서비스
- (ii) 시설: 개인이 경영하는 공공 또는 민간사업체로 아동을 위한 양육 시설

30.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대안양육의 범위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 (a) 법을 어긴 혐의 또는 법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어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결정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였으며, 「유엔 소년사법 행정을 위한 최소 기준 규정(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및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에 적용되는 상황에 놓인 18세 미만의 사람

(b) 최종 입양 명령에 따라 아동이 효과적으로 입양 부모의 양육을 받는 시점부터, 본 지침의 목적에 의해 해당 아동은 부모의 양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관련 국제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전위탁의 조건과 양립할 수 있다면 본 지침은 입양 전 또는 입양 예정 부모의 사전위탁에도 적용된다.

(c)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 또는 의지와 관계없이 비공식 환경에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오락을 위한 목적과 이유로 친척 또는 친구와 지내는 상황

31. 소관 당국 및 관련자들은 해당되는 경우 본 지침을 기숙학교, 병원, 정신·신체적 장애 또는 다른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센터, 캠프, 직장 및 아동 돌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타 기관에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IV. 대안양육의 필요성 최소화

A. 부모 양육 장려

32. 국가는 가족이 아동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부모 모두와 관계 맺을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 그 중 특히 출생등록의 권리, 안전한 주택 및 기초 보건, 교육 및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빈곤, 차별, 소외, 낙인, 폭력, 아동학대 및 성 학대, 약물 남용 근절을 위한 조치를 활성화하여 아동 유기, 포기 및 가정에서 분리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33. 국가는 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역량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일관적이고 상호강화적(mutually reinforcing)인 가족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34. 국가는 아동 유기, 포기 및 가정에서의 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보호, 양육 및 발달에 적절한 태도, 기술, 역량 및 수단을 가족에게 지원한다. 국가, 비정부 및 지역사회 중심 조직을 포함한 시민사회, 종교 지도자 및 언론의 보완적 역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보호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가족 강화 서비스: 부모 교육 및 강좌,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장려, 갈등 해결 기술, 고용 및 수입 창출 기회, 그리고 필요시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 등이 있다.
 - (b) 사회 지원 서비스: 보육, 중재 및 화해 조정 서비스, 약물 남용 치료, 재정 지원, 장애를 가진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서비스 등이 있다. 이는 가급적이면 통합적이고 침해적이지 않는 특성의 서비스로, 지역사회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바탕으로 가족이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c) 청소년 정책: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언제 부모를 떠나고, 미래의 부모로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성 및 생식건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한다.
35. 가정 방문, 다른 가족과의 그룹 미팅, 사례관리 콘퍼런스와 해당 가족의 책무 보장 등과 같이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보완적 방법 및 기법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 이는 가족 간 관계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어야 한다.
36. 국내법에 따라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와 그들의 자녀들(혼외 자식 여부에 상관없이)을 위한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증진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가는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이용, 부모 수당 및 상속 권리를 포함하여 부모로서, 그리고 아동으로서의 고유한 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임신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라는 낙인을 개선하는 노력을 펼친다.
37. 부모 또는 양육자를 여인 형제·자매가 가정 안에서 함께 지내길 원하는 경우 첫째가 가장 노릇을 할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는 법정대리인, 인정받은 책임감 있는 어른 또는 적절한 경우 19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호자의 역할을 할 법적 책임을 부여받은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하여, 이런 가정이 의무적으로 모든 형태의 착취 및 학대에서 보호받고 아동의 건강, 주거, 교육,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 및 사회복지사와 같은 관련 서비스의 감독과 지원을 받도록 보장한다.
38. 국가는 학교 종일반을 포함한 돌봄 및 일시 위탁(respite care)을 보장하여, 특별한 욕구

를 지닌 아동 양육 돌봄에 내재되어 있는 추가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부모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 분리 예방

39.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원칙에 기반한 적절한 기준을 개발하여 소관 당국 또는 기관이 아동의 안녕이 위험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아동 양육에 대한 가족의 실질적이며 잠재적인 역량을 포함하여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사정하는데 일관되게 적용한다.
40. 아동 분리 또는 재결합은 이러한 사정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모든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아동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인을 받아 자격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가 소관 당국을 대신하여 결정한다.
41. 국가는 임신, 출산, 모유 수유 기간 동안 통합적인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임신 단계별 적절한 발달과 아동 양육을 위한 존엄성과 평등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특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미래의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존엄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엄마·아빠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아동 포기를 예방한다.
42. 국가는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적절하고 가능할 때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친권이 박탈된 또는 유기된 아동의 비밀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43. 국가는 아동이 익명으로 유기되었을 시 가족을 찾을지 여부와 찾을 방법, 그리고 확대가족 내에서 재결합 또는 위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정책은 아동이 영구적인 가정보호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호 조치에 대한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신속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4.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기 위해 공공·민간기관 또는 시설에 문의했을 경우, 국가는 상담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실패했을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다른 적절한 전문적인 사정을 통해 아동을 영구적으로 책임질 의사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한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거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적절한 기간 내 아동을 영구적으로 위탁할 가정을 찾는 노력을 펼친다.

45.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단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공공·민간기관 또는 시설에 위탁하기 위해 문의하는 경우, 국가는 이들에게 상담 및 사회적 지원 제공을 보장하여 보호자가 아동을 계속 양육하도록 독려한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만 아동을 대안양육에 배치할 수 있다.

46. 교사 및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학대, 방임, 착취 또는 유기 위험을 판단하고 이를 담당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47.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동을 분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 절차 및 사법적 검토에 따라 소관 당국이 결정한다. 부모는 항소 및 적절한 법정대리인을 선정할 권리를 갖는다.

48. 아동의 유일한 또는 주 양육자가 예방구금 또는 판결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례에 대해 비구금조치 및 판결을 내린다. 국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감옥에서 태어난 아동 및 감옥에서 한부모와 지내는 아동을 분리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는, 다른 상황에서의 아동 분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부모와 함께 구금되어 있는 아동이 적절한 돌봄 및 보호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B. 가족 재결합 증진

49. 아동과 가족의 잠재적 재결합을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계자들(아동, 가족, 대안양육자)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정당히 지정된 개인 또는 팀이 해당 아동의 상황을 사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결합 가능 여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하며 그 절차는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50. 재결합의 목적과 가족 및 대안양육자의 핵심 업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받는다.
51. 아동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주기적이며 적절한 소통 체계를 개발 및 지원하고 담당 기관은 이를 감독한다.
52. 아동과 가족의 재결합 여부가 결정되면, 감독 하에 이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아동의 나이, 욕구, 진화하는 역량 및 분리의 원인을 고려한 사후 및 지원 조치를 동반한다.

V. 대안양육 체계

53.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특정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및 기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는 기존의 입법적, 정책적, 재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해결책을 우선으로 기타 적절한 대안양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한다.
54. 국가는 본 지침의 일반원칙에 따라 다양한 대안양육이 긴급사태 시,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55. 국가는 대안양육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이 소관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승인을 얻고 본 지침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 및 점검을 받도록 한다. 관련하여, 소관 당국은 승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위해 양육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관련 적절한 평가 항목을 개발한다.
56. 확대가족, 친구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비공식 양육 관련하여, 국가는 적절한 경우 해당 양육자가 소관 당국에 보고하여 아동의 복지와 보호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받도록 독려한다.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국가는 해당 아동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비공식 양육자가 적정 시간이 지난 후 현재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그렇다고 예상되는 범위까지 양육 체계를 공식화하도록 독려한다.



VI. 가장 적절한 유형의 양육 결정

57.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대안양육 관련 의사결정은 사법적, 행정적 또는 적절한 경우 소 송절차 시 아동을 대변할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기타 적절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야 한다. 수립된 구조 및 메커니즘을 통해 의사결정 관련 엄격한 사정, 기획 및 검토를 실시 하고, 가능한 경우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사례별로 진행하며,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아동,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한 다. 이를 위해, 모든 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국 가는 최선의 양육 유형을 결정하는 전문가들이 훈련과 인정을 받도록 적절한 자원 및 경로를 제공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본 지침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58. 사정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아동의 즉각적인 안전 및 안녕, 그리고 장기적인 양육 및 발달을 고려하고 아동의 개인적·발달적 특성, 민족적·문화 적·언어적·종교적 배경, 가정·사회적 환경, 진료기록 및 특별한 욕구를 포함한다.
59. 소관 당국이 아동을 접수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최초 및 재검토 보고서는 특히 부당한 개입 및 모순되는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 결정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 되어야 한다.
60. 빈번한 양육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발달 및 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야 한 다. 또한, 단기 아동 배치의 목적은 적절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 의 연속성은 핵가족 또는 확대가족과의 재결합을 통해 지체 없이 보장한다. 만약 안정적인 대안양육 환경 또는 2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안정적이고 적절한 양육 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
61. 보호 제공과 영구적 양육을 위한 계획은 고려되는 각각의 선택지의 단기적·장기적인 장단 점을 고려하여, 이상적으로 아동이 양육을 받기 전 가장 빠른 시일부터 기획되어야 하며, 장단기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62. 아동 분리를 예방하기 위한 돌봄 제공과 영구적 양육에 대한 계획은 특히 가족에 대한 아 동 애착의 특성과 깊이, 아동의 안녕과 조화로운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 가족

의 구성원이라 느끼고 싶은 아동의 욕구 또는 바람, 지역사회 및 본국에서 지내고 싶은 아동의 욕구, 아동의 문화적·언어적·종교적 배경,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토대로 한다.

63.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배치 목적과 이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서술한다.
64. 아동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은 대안양육 유형과 각 유형 관련 영향,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제공받는다.
65. 아동의 특정 욕구, 신념 및 특별한 희망 사항에 대한 보호조치 준비, 이행 및 평가는 가능한 최대의 범위에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잠재적 위탁 양육자 및 양육자가 참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관 당국의 재량으로 아동,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아동의 삶에 중요한 다른 관계자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다.
66. 정당하게 구성된 법정, 판정부 또는 행정적 또는 기타 담당기관과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법정에서 위탁 결정에 대해 항의할 기회를 얻고, 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7. 국가는 가급적 적어도 3달에 한 번 주기적이며 상세한 검토를 통해 일시보호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아동 개인의 발달 및 기타 변화하는 욕구, 가정환경 변화, 그리고 이런 상황 속 현 배치의 적절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및 처우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승인을 받은 개인이 검토하고 아동과 아동의 삶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한다.
68. 아동은 기획 및 검토 과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육 환경 관련 모든 변화에 대비한다.

VII. 대안양육 제공

A. 정책

69. 국가 또는 적절한 수준의 정부는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의 공식·비공식 양육 관련 협의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정책은 정확한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되고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보호, 양육 및 발달 관련 주 양육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아동의 책임자를 파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아동의 부모 또는 주 양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추정한다.

70.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하고 지원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기관과 개인의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장려하는 정책 및 절차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양육, 사후 돌봄 및 아동보호를 보장한다. 대안양육 감독기관의 위치 그리고/또는 설립을 확정하여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71. 시설 및 가정형 양육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대안양육의 수준, 특히 양육자의 전문적 기술, 선발, 훈련 및 감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정의되고 명시되어야 한다.
72. 각 국가의 소관 당국은 본 지침에 따라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는 문서를 생성한다. 대안양육에 배치된 아동은 양육환경의 규칙, 규정 및 목적과 그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이해한다.
73. 모든 대안양육은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본 지침 및 적용되는 법의 기준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자의 목적과 목표를 명문화해야 한다. 대안양육자는 법적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자격을 획득하고 승인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74. 아동이 대안양육에 의뢰 또는 배치될 때 필요한 표준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수립한다.
75.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여 대안양육 제공 관련 문화·종교적 실천은 아동 권리와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과정은 관련 문화·종교 지도자, 전문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 부모, 기타 관련자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비공식 양육

76. 개인 또는 가족이 제공하는 비공식 양육의 적절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비공식 양육을 인정하고 어떤 비공식 양육 환경이 특별한 지원 또는 감독을 필요로 하는지 평가하여 최적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7. 소관 당국은 적절한 경우 비공식 양육자가 돌봄 형태를 알리도록 독려하고, 그들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될 서비스 및 혜택의 이용을 보장한다.
78. 국가는 비공식 양육자의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한다.
79. 국가는 특히 친척 관계가 아닌 자, 아동이 과거에 알지 못한 친척, 또는 아동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친척이 제공하는 비공식 양육을 받는 아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학대, 방임, 노동 및 다른 형태로 착취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특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고안한다.

2. 모든 공식 대안양육에 적용되는 일반조건

80. 대안양육에 아동을 배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훈련을 받은 비공무(non-uniformed) 인력이 참여하여 가장 조심스럽고 아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1. 아동이 대안양육을 받을 때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전(前) 양육자를 포함한 가까운 지인과 연락하도록 독려하여 아동보호 및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 아동은 자신과 가족 구성원이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
82. 국가는 감옥에 있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로 인해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이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3. 양육자는 지역의 식습관, 관련 식사 기준 및 아동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아동이 적절한 양의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식이 보



충제를 제공한다.

84. 양육자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고 필요시 진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85. 아동은 아동의 권리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시설에서 최대한의 공식·비공식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86. 양육자는 장애아동, HIV/AIDS에 걸렸거나 영향을 받은 아동, 또는 다른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놀이와 여가활동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회는 돌봄 환경 안과 밖에서 제공한다. 아동이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장려한다.
87. 특수 욕구를 가진 이들을 포함한 영아와 어린 아동에게 특정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애착 관계 유지를 포함하여 안전, 건강, 영양, 발달 및 기타 관련 특정 욕구가 모든 돌봄 환경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88. 아동이 믿는 종교의 자격 있는 대리인의 방문을 포함하여 종교적 및 영적 삶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하며, 종교적 행사, 교육 또는 상담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종교적 배경을 존중하고 양육되는 아동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꾸기 위해 독려하거나 설득해서는 안 된다.
89. 아동을 책임지는 모든 어른은, 아동 개인위생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 성별 차이 및 상호 작용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적절하고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한다.
90. 양육자는 아동과 긍정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
91. 모든 대안양육 환경에서 제공하는 숙소는 건강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92. 국가는 대안양육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아동이 학대받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관 당국을 통해 이를 감독한다. 아동의 생활환경 결정 시 특히 나이, 성숙도 및 취

약 정도를 특별히 고려한다. 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는 불필요하게 아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내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과 비교하여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93. 대안양육을 받는 모든 아동을 탈취, 인신매매, 아동매매 및 다른 모든 형태의 착취에서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이로 인한 아동의 자유와 행동 억압은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94. 모든 양육자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와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고, 진화하는 역량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95. 국가, 기관 및 시설, 학교, 지역사회는 아동이 대안양육을 받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대안양육에서 보호받는 아동을 식별하는 노력도 최소화한다.
96. 폐쇄 또는 독방 감금 또는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모멸적인 대우를 포함한 모든 혼육 및 행동 관리는 국제 인권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된다. 국가는 필요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보장한다. 가족 구성원 및 아동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람과의 연락을 제한하는 것을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97. 아동의 근본적인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법에 근거하고,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수준에서 아동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온전성(integrity)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상 무력 및 그 어떤 형태의 구속도 허가해서는 안 된다.
98. 보호대상 아동은 온전히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람은 아동의 동의를 받아 소관 당국이 지정한다. 아동은 법적 또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일부 상황에서 비밀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99. 보호대상 아동은 대우 또는 여건에 대해 불만 또는 우려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익숙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초기상담, 피드백, 실행 및 추가 상담을 포함한다. 과거 양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충



분히 고려하며, 그 과정은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전문 인력이 주관한다.

100.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 사진, 개인 물품과 기념품을 포함하여 생애에 관한 책(life story book)이 아동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이 책은 아동이 평생 동안 가질 수 있어야 한다.

B.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

101. 아동의 부모가 부재하거나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고, 소관 행정당국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아동을 대안양육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지정된 개인 또는 담당 기관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과의 충분히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및 책임을 부여받는다. 국가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102. 관련하여, 소관 당국은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직접적으로 또는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기관을 통해 감독한다. 지정 권한이 있는 당국이 개인 또는 기관의 행동을 책임진다.
103. 법적 책임을 부여받은 개인은 아동 관련 이슈를 잘 아는 명망 있는 사람으로, 아동과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책임질 아동의 특수한 혹은 문화적인 욕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 및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다. 또한,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
104. 지정된 개인 또는 기관의 역할과 특정 책임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특히 아동이 적절한 양육, 숙소, 건강관리, 발달 기회, 정신적 지지, 교육 및 언어적 지원을 받도록 보장한다.
 - (b) 필요한 경우, 아동이 법정대리인 및 다른 대리인과 협의하여 의사결정 당국이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 자문하며 알려주도록 보장한다.

- (c)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안정적인 해결책 도출에 기여한다.
- (d)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에 연계한다.
- (e) 아동의 가족 찾기를 지원한다.
- (f) 아동 송환 및 가족과의 재결합 추진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 (g) 적절한 경우, 아동이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도록 돕는다.

1. 공식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시설

105. 모든 기관과 시설의 등록 및 운영은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기타 담당 당국의 소관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법률 위반 시 처벌 가능하다는 점 또한 적시한다. 적어도 기관 또는 시설의 목표, 기능, 채용절차 및 자격, 양육 환경, 재정 자원 및 관리를 포함한 기준에 따라 소관 당국이 운영을 허가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106. 본 지침에 따라 모든 기관과 시설은 자격을 갖춘 적절한 양육자 채용, 모니터링, 감독 및 평가를 위한 목적, 정책, 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서술한 정책과 업무 준칙을 마련하여 목적 달성을 보장한다.
107. 모든 기관과 시설은 본 지침에 부합하는 직원 행동 강령을 개발하여 전문가, 특히 양육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팀원의 위법 행위 혐의를 명확히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다.
108. 재정 지원은 기관 또는 시설에서 주관하거나 제공하는 양육에 불필요한 아동 배치 또는 장기간 위탁을 조장하는 형태로 제공되면 안 된다.
109. 양육을 받는 모든 아동에 대한 상세한 문서, 재직 직원 및 금융거래를 포함한 대안양육 서비스 행정에 대한 포괄적이며 최신의 기록을 유지한다.
110. 보호대상 아동의 기록은 온전하고, 가장 최신이며 보안과 비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하고 적합한 신분 증명과 기타 개인정보와 함께 배치·퇴소, 양육 유형,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을 포



함한다.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해당 아동에 대한 문서 및 기록에 가족정보도 포함한다. 이 기록은 아동이 대안양육을 받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고 현재 양육을 담당하는 공인된 전문가와 협의한다.

111. 위 기록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과 비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히 제공한다. 기록 관련 협의 전, 동안, 후에 적절한 상담도 지원한다.
112. 모든 대안양육 서비스에는 아동 관련 모든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 하며, 모든 양육자가 이를 인지하고 준수한다.
113. 모범사례로써, 모든 기관 및 시설은 아동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양육자 및 직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채용 전 적절하고 종합적인 평가 시행을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114. 기관 및 시설에서 채용한 양육자의 보수를 포함한 근무 조건이 동기 부여, 직업 만족도 및 연속성을 극대화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15. 모든 양육자는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 긴급 배치 또는 거주지 외 지역으로 배치되는 등과 같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의 특정 취약점에 대해 교육받고, 문화적, 사회적, 성별 및 종교적 민감도를 보장한다. 국가는 전문가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자원 및 창구를 제공하여 본 규정 이행을 독려한다.
116. 기관 및 시설에서 채용한 모든 양육 관계자가 문제적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 기술, 가해 행위 또는 자해 예방을 위한 수단을 포함한 훈련을 받는다.
117. 기관과 시설은 양육자가 특히 HIV/AIDS 또는 기타 만성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겪는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가정 위탁

118. 소관 당국 또는 기관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담당 직원을 훈련하여, 아동의 욕구를 사정하

고 잠재적 가정위탁 양육자의 능력과 자원에 맞게 연결시키며 위탁 관련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119. 각 지역은 아동의 가족, 지역사회 및 문화적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인정받은 위탁 양육자 군(pool)을 확인한다.
120. 위탁 양육자를 위한 특별한 준비,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간격(아동 배치 전, 동안, 후)으로 제공한다.
121. 양육자는 위탁 기관과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관련된 위탁 기관 및 다른 시스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122. 이행 및 정책 개발을 상호지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위탁 양육자 조합 설립을 독려한다.

C. 시설 양육

123. 양육 시설은 규모가 작고 아동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하여 설립되고 가족 또는 소집단에 가장 가까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육 시설의 목표는 일시 보호 제공과 아동-가족의 재결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경우 입양 또는 이슬람 법의 카팔라 시스템을 포함하여 아동이 대안가족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도록 보장한다.
124.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보호 및 대안양육만 필요로 하는 아동이 형사사법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아동과 분리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125.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당국은 양육 시설 내 적절한 입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선별 절차를 수립한다.
126. 국가는 양육 시설 종사자 수를 충분히 보장하여, 개별 아동에게 관심을 쏟고 적절한 경우 아동에게 특정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양육자는 양육 시설의 목적 및 목표의 효과적 이행과 아동 보호를 위해 배치된다.
127. 아동을 양육 시설에 배치하기 위한 기관, 시설 또는 개인에 의한 모집과 유도 행위는 법률,



정책 및 규제를 통해 금지한다.

D. 감독 및 모니터링

128. 특정 공공당국은 양육 관련 기관, 시설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원 및 아동과의 협의와 감시를 포함하여 특히, 사전 공지 및 미공지 방문으로 이루어진 빈번한 감독과 같은 책임이 있다.
129.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위 감독에 양육자를 위한 훈련 및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
130. 국가는 인권 증진 및 보호(파리 원칙)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고려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아동, 부모 및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책임자는 다음을 포함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a) 대안양육 유형에 불문하고 배치된 모든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협의, 방문, 아동 권리침해 협의 조사, 불만사항 또는 자체 계획에 따른 조사를 시행한다.
 - (b)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아동보호, 건강, 발달 및 돌봄 관련 지배적인 연구 결과와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 (c) 법률안 관련 제안서 및 평가서를 제시한다.
 - (d)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본 지침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을 포함하여, 유엔아동 권리협약에 명시된 보고 절차에 자체적으로 기여한다.

E. 사후 관리 지원

131. 기관과 시설은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획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 관련 동의된 절차를 시행하여, 적절한 사후 돌봄 그리고/또는 후속조치를 보장한다. 기관과 시설

은 보호 기간 동안 아동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및 일상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온전히 속하도록 체계적으로 돕는다.

132. 보호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은 아동의 성별, 나이, 성숙도 그리고 특정 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착취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이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데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장애아동과 같이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은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혜택을 받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불필요하게 시설에 배치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보장한다. 민간과 공공영역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받았던 아동을 고용하도록 독려한다.
133. 가능한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독립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정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펼친다.
134.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보호종료를 위한 준비를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
135. 생활 기술 훈련의 한 부분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적으로 독립되고 수입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136. 보호종료 청소년은 사후 돌봄 기간 동안 적절한 재정 지원과 함께 사회적, 법적 및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VIII. 거주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위한 양육 제공

A. 해외에 배치된 아동 양육

137. 본 지침은 의료, 일시 위탁, 또는 기타 이유로 아동을 해외에 배치하는데 관련된 민간기관 및 모든 관계자에 적용된다.
138. 관련 국가는 지정 기관이 양육자 선정, 서비스 품질 및 후속조치, 운영 감독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준을 수립하도록 보장한다.
139. 국가는 1996년 10월 19일 「부모의 책임 및 아동보호조치 관련 관할권·준거법·승인·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을 비준 또는 승인하여 관련 국제협력 및 아동보호를 보장한다.

B. 이미 해외에 있는 아동 양육

140. 본 지침을 비롯하여 다른 관련 국제규정은 이유 불문하고 거주지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민관기관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141.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이 이미 외국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돌봄을 받아야 한다.
142. 적절한 양육 제공을 위해 사례별로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소수민족의 아동, 이주배경의 아동 또는 문화적 및 종교적 다양성을 가진 아동 등)의 다양성과 격차를 고려한다.
143. 국가에 비주거적으로 입국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이 영토에 접근하거나 지내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144. 강요에 의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인신매매 피해 아동은 경찰서에 구금되거나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145.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은 아동의 신원이 확인되는 순간 국가는 보호자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돌봄과 안녕을 책임지는 조직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아동의 지위 인정 및 결정 기간 동안 동반하도록 한다.
146.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부합하고 관련자들이 위협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아동이 원가정을 찾고 관계를 재수립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47. 국가 및 사회복지 당국은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미래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문서와 정보를 조달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본국 내 아동에 대한 위협, 사회 및 가족 상태를 사정한다.
148.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본국에 돌아가면 안 된다.
- (a) 위험 및 보안 사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보안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b) 아동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부모, 기타 친척, 성인 양육자, 정부기관 또는 승인된 기관 또는 시설과 같은 적절한 양육자가 아동을 책임지고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제공한다 동의하지 않거나 책임질 수 없는 경우
 - (c) 소관 당국의 사정에 따라 기타 이유로 인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149. 위 목표를 고려하여 국가, 지역, 지방 당국 및 시민사회기관 간 협력을 장려하고 강화한다.
150.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아동 또는 가족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효율적인 영사 서비스 또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 본국의 법정 대리인을 준비한다.
151.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의 복지 담당자는 아동의 의사에 어긋나거나 아동 최선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가족 간 주기적인 소통을 장려한다.
152.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을 입양 또는 이슬람법의 카팔라 제도에 1차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해당 아동의 부모, 확대 가족 또는 거주지 내 양육자를 찾는 노력을 펼친 후 이를 고려한다.

IX. 긴급돌봄

A. 지침 적용



153. 본 지침은 국제적 및 비국제적(non-international) 무력분쟁과 군사점령을 포함하여 자연재해 및 인재와 같은 긴급사태 발생 시에도 적용한다. 긴급사태 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돌보길 원하는 개인 및 기관이 본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독려한다.
154. 이 경우, 아동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지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실질적 당국, 국제사회 및 모든 국가, 지방, 외국 및 국제기구는 다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 (a) 숙련되고, 전문적이며 필요한 자원 및 수단을 가진 기관 및 개인이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을 돌보도록 보장한다.
 - (b) 필요한 경우 일시적 및 장기적 가정형 양육 체계를 구축한다.
 - (c) 양육 시설은 가정형 양육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일시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한다.
 - (d) 대규모의 아동에게 영구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양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새로운 양육 시설 설립을 금지한다.
 - (e) 160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국가 간 이동을 예방한다.
 - (f) 가족을 찾기 위한 협력과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한다.

분리 예방

155.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기관 및 당국은 아동이 부모 또는 기본 양육자에게서 분리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가족 단위보다 아동 개인을 위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여 의도치 않게 아동과 가족의 분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한다.
156. 다음을 통해 아동의 부모 또는 다른 기본 양육자에 의한 분리를 예방한다.
- (a) 모든 가정이 식량, 의료 지원 및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한다.
 - (b)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가족 분리 시 양육 시설 선택 및 이용을 제한한다.

B. 양육 지원

157. 아동 양육 및 보호,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158. 아동의 사회화 및 발달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양육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을 장려한다.
159.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이 학대 및 착취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를 보장한다.
160. 건강, 치료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 이동을 제외하고, 대안양육을 목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거주지 외 다른 나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아동을 이동했을 경우, 원가정과 최대한 가까워야 하며 부모 또는 아동이 아는 양육자를 동반하고 복귀 계획을 수립한다.
161. 적절한 기간 내 또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족과의 재결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입양 또는 이슬람법의 카팔라 시스템과 같이 안정적이며 확정적인 해결책을 고려한다. 여의치 않은 경우, 가정위탁 또는 그룹홈 및 감독을 받는 생활환경을 포함한 적절한 양육 시설과 같은 장기적 옵션을 고려한다.

C. 가족 찾기 및 재결합

162. 어떤 긴급사태에서도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을 확인, 등록 및 문서화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
163. 등록 활동은 정부가 하거나 책임과 경험이 있는 정부 담당자나 명확한 의무를 부여받고 직접 감독하는 기관에서 한다.
164. 수집된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전달 및 저장을 위해 시스템에 입력한다. 또한, 가족 찾기, 재결합 및 양육 관련 정당하게 의무를 부여받은 기관에만 정보를 공유한다.



165. 가족 구성원 또는 1차 법적 또는 관례적 양육자를 찾는데 관련된 사람은 혐의된 체계 내에서, 가능한 경우 표준화된 형식 및 상호 호환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의 행동이 아동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166. 모든 아동에게 가족 관계의 타당성과 아동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 의지를 확인한다. 가족을 찾는 모든 노력을 다하기 전까지는 입양, 개명 또는 가족이 예상 거주지와 먼 곳으로 이동하는 등과 같이 재결합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167. 향후 가족과의 재결합 추진을 위해 아동 배치에 대한 모든 적절한 기록을 안전한 방법으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01년 11월 출범하였으며, 인권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의 4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권정책

-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 국제인권조약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

• 조사·구제

- ▶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조사·구제
- ▶ 성희롱 조사·구제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 교육·홍보

-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 국내·외 협력

- ▶ 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인권기구와 교류·협력

인권교육센터

- ▷ edu.humanrights.go.kr
- ▷ m.edu.nhrc.go.kr

인권도서관

- ▷ library.humanrights.go.kr

인권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33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 내 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97-01

ISBN 978-89-6114-916-7 93330